C2001-17 / 2001. 8.

연해주 한·북·러 농업협력사업 추진 기본전략 연구

김 영 훈 부연구위원
김 운 근 선임연구위원
김 정 부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머 리 말

러시아 연해주는 지리적으로 우리 나라와 인접한 지역이다. 또한 일찍이 우리 민족은 불모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이 지역에 이주하여 농지를 일구어 왔으며 벼농사를 전파했다.

이와 같이 연해주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와 깊은 인연이 있지만 분단과 냉전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었다. 우리 나라의 기업과 단체들이 연해주와 다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0년대 들어 동서 냉전이 본격적으로 종식되면서부터이다. 이들은 현지인과 함께 합작법인 등을 설립하여 작은 규모지만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연해주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속속 귀환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자본이 부족하여 많은 농지가 유휴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는 2010년까지 계획된 '항카호 20만ha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농업개발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우리 나라가 참여해 줄 것을 제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이래 계속되는 식량난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많은 식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도움과 협력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연해주 3국 농업협력사업은 러시아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북한, 러시아 3국이 연해주에서 함께 농업협력사업을 펼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구상한 것이다. 우선 협력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해 보았다. 이 연구 결과가 연해주 농업협력에 관한 정책 담당자에게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끝으로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 자료제공과 많은 조언을 준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1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강 정 일**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3.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연해주 농업의 기본여건

1. 농업생산 여건 4
   1.1. 기상 및 자연여건 4
   1.2. 토지 및 농경지 5
   1.3. 농경지 개량 상태 6
   1.4. 농업생산성 9
2. 연해주의 해외 농업투자 유치 계획 9
   2.1.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제도 9
   2.2. 벼와 콩 생산·가공에 관한 지역 특별 프로그램(1996년 입안) 10
   2.3. 항카호 주변 20만ha 농업개발계획 11
3. 제도적 환경 16
   3.1. 조세 관련 제도 16
   3.2. 토지 관련 제도 17
   3.3. 노동 관련 제도 18
   3.4. 환경보호 관련 제도 18

제 3 장 연해주 농업협력사업 기본구상

1. 한국의 해외농업개발 사례와 시사 19

1.1. 1980년대 이전의 해외농업개발 19
1.2. 최근의 해외농업개발 20
2. 한·북·러 3국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21
2.1. 한국-러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21
2.2. 북한-러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23
3.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의 의의와 추진목적 25
3.1.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의 의의 25
3.2.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의 추진 목적과 조건 26
4. 연해주 농업협력사업 기본구상 27
4.1. 협력사업 주체와 협력대상 27
4.2. 농업협력사업 규모 28
4.3. 농업협력사업 접근 방안 30
4.4. 시범농장 설립을 위한 농지확보 방안 32
4.5. 시범농장 운영 방향 33

제 4 장 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전략

1. 1단계: 연해주 정부 접촉과 조사대상 농장 선정 35
2. 2단계: 후보농장 선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 36
3. 3단계: 시범농장 후보지 타당성 조사 37
4. 4단계: 시범농장 설립 39
4.1. 현지법인 설립과 준비 39
4.2. 시범농장 적지 임차계약 39
4.3. 농지임차의 대안으로서 재임차 방식과 합영농장 40
4.4. 시범농장 설계 및 운영 준비 41
5. 5단계: 시범농장 운영 42
5.1. 노동자 고용 42

5.2. 농업기자재 조달 43
5.3. 영농과 생산기반 확충 44
5.4. 생산물의 처리 및 유통 45
6. 6단계: 한북러 농업협력사업 확대 46
6.1. 연해주 농업협력사업 확대 조건 46
6.2. 농장경영의 확장 46
6.3. 항카호주변 20만 ha 개발 계획에의 참여 47

제 5 장 협력사업 추진 단계별 문제와 대응방안

1. 준비단계의 문제 48
1.1. 연해주 정부와의 협의 단계 48
1.2. 임대차 계약의 경우 49
1.3. 합작 계약의 경우 50
2. 시범농장 건설 및 운영단계의 문제점 52
2.1.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52
2.2. 농업기반공사와 극동수리기획의 경합 52
2.3. 노동 관련 문제 53
2.4. 농산물 수출 및 대북 지원 문제 53
2.5. 시범농장 운영 민간이양 문제 53

제 6 장 요 약

1.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의 의의와 목적 55
2. 연해주 농업협력사업 기본구상 56
3. 연해주 농업협력사업 단계별 추진전략 58
3.1. 1단계: 연해주 정부 접촉과 조사대상 농장 선정 58
3.2. 2단계: 후보농장 선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 59

3.3. 3단계: 시범농장 후보지 타당성 조사 59
3.4. 4단계: 시범농장 설립 60
3.5. 5단계: 시범농장 운영 62
3.6. 6단계: 한북러 농업협력사업 확대 64

참고 문헌 66

부 록

부록 1 시범농장의 법적 형태 검토 69
부록 2 회사설립 절차와 등록 방법(주식회사) 70
부록 3 북한 노동력 고용 문제 73
부록 4 예산 및 기금으로 편입되는 세금 및 부과금 75
부록 5 러시아 농업지역의 주요 조세-하롤군 사례- 76
부록 6 나호트카자유경제구역에서의 한러공업단지 설립을 위한 협정 주요내용 79
부록 7 러시아에서의 곡물 처리 문제 80

표 목 차

표 1 연해주와 한국의 주요 농업지대 기상 비교 5
표 2 연해주 농지 이용 상황(2000년) 6
표 3 연해주 농지개량 상태의 평가 기준(논) 7
표 4 연해주 농장별 농지개량 상태 8
표 5 작물별 단수 비교 8
표 6 연해주 벼농사 지표 변화(1986-95) 10
표 7 항카호 개발 사업비 소요액 15
표 8 연도별 곡물 생산 추정치 16
표 9 1980년대 이전 남미지역의 해외농장개발 실태 20
표 10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규모(1995~2001.6) 29

빈 면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한 농업지원 모델에는 ① 직접적인 대규모 식량 원조, ② 직접적인 대규모 농자재(비료) 원조, ③ 민간지원단체(NGO)를 통한 중소규모 농업기술협력 및 농자재지원 등이 있음.

- 식량 원조는 당면한 식량위기 상황을 단기간에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따라서 긴급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도적 조치임. 그러나 식량위기 상황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식량 수입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지원을 지속해야 할 이유를 찾기 곤란함.
- 농자재 원조는 북한에게는 다음 연도 식량공급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농자재산업을 지지하여 고용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대북 지원효과는 단발성에 그치며 물량원조에 따른 파생효과도 뚜렷하지 않음.
-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은 인적교류 확대, 협력모델 실험 등 비교적 작은 투입으로 큰 파생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형태임. 그러나 대규모로 추진하기 어려워 북한의 당면 식량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데에는 미흡함.

○ 북한의 호응이 없어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교류협력 모델로서 ④ 북한지역 시범농장 운영을 통한 농업지원, ⑤ 북한의 농업복구 및 개발계획에 대한 대규모 지원 등이 있음.

- 이 형태의 농업협력사업이 실행된다면 북한의 농업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러나 북한주민들과 대규모 인적접촉이 불가피하므로 현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농업교류협력 모델로 ⑥ 연해주 한·북·러 농업개발협력을 통한 대북 지원이 있음.

- 북한 영외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이므로 북한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대규모 식량원조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도 있음.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한국, 북한, 러시아 3국이 대북 지원식량을 생산하는 동시에 유사시 식량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농장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3국 농업협력사업 추진이 논의되고 있음.

- 한국은 기술과 자본, 북한은 노동력, 러시아는 토지와 시설을 각각 제공하는 협력사업 형태

○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대규모로 추진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 대상지 선정, 타당성 조사와 분석, 시범사업 실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함.

○ 또한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 상대방이므로 사전에 협력 의향과 조건에 대해 양해해야 하며, 이러한 양해를 전제로 준비단계의 협조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양해사항: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전향적 의사 천명, 북한이 노동력을 파견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할 것을 양해
- 러시아의 양해사항: 투자대상농장 선정과 대상농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농업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

제, 특히 제3국 노동력 고용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노력할 것을 양해

○ 이러한 제반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측에서 먼저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기초자료로 러시아와 북한, 국내 관계부처의 협력을 구함.
- 이를 기초자료로 사업을 형성하고 타당성 조사에 착수함.

○ 연구목적

-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의 목표, 기본구상,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가능성을 검토

3. 연구범위 및 방법

○ 주요 연구 범위

-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중점 조사 방향을 제시함.
- 연해주 농업협력사업 추진시 사업형성 단계에서 본격적 농업협력사업 추진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접근 방향을 제시함.
- 연해주 농업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계별로 선택 가능한 대안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 연해주 농업협력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결정될 문제이므로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 연구 방법

- 1997년에 실시된 "러시아 연해주 농업투자환경 조사 결과"를 통해 연해주 농업환경 및 투자환경에 대해 기초 조사 수행
- 2001년 4월에 수행된 "러시아 연해주 농업진출업체 경영실태 조사단 수집자료"를 분석하여 농업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함.
- 분야별 전문가 면담 조사를 통해 연해주 농업협력시 고려해야 할 분야별 특성을 파악함.

제 2 장

연해주 농업의 기본여건

1. 농업생산 여건

1.1. 기상 및 자연여건

○ 여름철이 짧아 재배기간이 제한됨. 따라서 정상적인 벼농사가 이루어질 확률은 80%임.[1)]

- 일 평균기온 10℃ 이상 일수는 약140일(5월 중순~10월 상순)이며, 적산온도는 2,524~2,582℃
- 일 평균기온 15℃ 이상 일수는 약 96일(6월 상순~9월 중순)이며, 적산온도는 1,866℃
- 무상일수는 155~161일
- 일조량 : 4~10월중 1,509시간

○ 몬순기후로서 연간 강수량 중 80% 이상이 4~10월에 집중됨. 문제는 파종기의 강우로서 봄철 파종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강수량은 연평균 600㎜이지만 항카호의 수원이 풍부하여 물부족 문제는 없음.

---

1) Tour, A. S., et al, "극동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벼농사를 위한 토지개발", 남정욱 역, 『북방농업연구』, 제4권, pp136-137, 1997. 11.

표 1 연해주와 한국의 주요 농업지대 기상 비교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평균기온(℃)	항카	-17.7	-13.6	-4.8	4.4	11.6	16.5	20.6	20.9	14.9	6.7	-4.3	-13.9	-
	안주	-7.8	-3.8	2.3	9.7	15.6	20.4	23.5	23.9	18.4	11.1	3.3	-4.0	-
	수원	-3.9	-1.8	3.7	10.9	16.5	20.9	24.4	25.1	19.8	13.0	5.7	-1.2	-
최저기온(℃)	항카	-22.7	-19.3	-9.9	-0.4	6.4	12.0	16.4	16.8	10.0	1.7	-8.8	-19.0	-
	안주	-12.9	-8.8	-2.5	4.0	10.1	15.7	20.0	20.0	13.4	5.6	-1.1	-8.2	-
	수원	-8.8	-6.5	-1.4	4.9	10.8	16.3	21.2	21.4	14.9	7.1	0.6	-5.9	-
강수량(㎜)	항카	5	6	12	27	58	82	97	118	82	44	17	7	555
	안주	13	12	36	37	71	109	297	215	99	41	39	15	983
	수원	27	28	50	95	85	102	329	291	149	58	55	21	1,348

주 : 항카와 수원은 1951~80년 평균치, 안주는 1973~94년 평균치
자료 : 항카와 수원은 농어촌진흥공사(1997.9), 안주는 기상청(1995)

- 4~5월의 강우로 인해 파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습이 되는 일수가 10일 중 6일 가량임.

○ 벼재배의 경우 수확전 신속한 배수를 실시해야 함.

- 등숙기의 토양온도 유지를 위해 배수를 최대한 늦추어야 하는 반면, 수확작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배수가 중요함.

1.2. 토지 및 농경지

○ 연해주의 농지면적은 1,670,000 ha에 달하고 있으나 2000년 경작면적은 불과 450,000 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 전체 농지면적의 27%임.

○ 벼농사는 항카호 남쪽과 아르세네프카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1984년까지 "벼농사 발전 국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논면적이 64,000 ha로 확대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투자 중단
- 생산기반의 훼손과 투입물재의 부족으로 2000년 들어 전체 논 면적의 12.5%인 8,000 ha만 식부

표 2 연해주 농지 이용 상황(2000년)

단위 : 천ha

구 분	총면적	개발가능지	농지면적	경지면적	경작면적
극동지역	621,590	n.a	6,619	2,931	-
- 그중 연해주	16,590	2,500	1,666	800	450
- 그중 논	-	210	64	-	8

1.3. 농경지 개량 상태

○ 연해주 지역의 논을 <표 3>에 나타난 8개 항목으로 농지개량 상태를 평가한 연구에 의하면, 연해주의 논 대부분의 개량상태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음(Tour).
- 벼농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전면재정리나 부분정리가 필요함.
- 재정리가 필요한 면적은 조사대상 논면적의 72%를 차지함.

○ 현지 농장과 계약시 농지의 개량상태에 따라 임차료 책정 혹은 현지 농장의 투자규모 책정에 유의해야 함.

표 3 연해주 농지개량 상태의 평가 기준(논)

평 가 항 목	토 양 개 량 상 태		
	양 호	보 통	불 량
1. 논의 정지 상태	논바닥의 고저차이가 · ±5㎝정도로 정지된 면적: 60～80% · ±10㎝정도로 정지된 면적: 20～40%	· ±5㎝정도로 정지된 면적: 50% · ±6～10㎝로 정지된 면적: 25% · 나머지 ±11～20㎝ 이상	· ±5㎝정도로 정지된 면적: 10% · ±6～10㎝로 정지된 면적:10～30%
2. 농지의 비옥성 · 부식토의 깊이 · 상층토의 부식토 저축량 · 부식토층 동질성 · 경작층 동일성(토질결합) · 토양 산성도 · 염기성	 25㎝이상 150t/ha이상 전면 동질 무결합 pH: 6～7 흡수된 Na량이 유기염기의 5% 이하	 15～25㎝ 70～150t/ha 면적의 15% 부식토 분실 단일결합 pH: 4～6 5 ～10% 이하	 15㎝ 이하 75t/ha이하 면적의 30% 부식토 분실 두가지 이상 결합 pH: 4이하 -
3. 토양 수축율 예측 · 토성 · 토양비중 · 토양의 개별성	 풍족한 광물토 120～1.33g/㎤ 48～50%	 부드러운 토양 1.20g/㎤ 50～80%	 유기물이 많음 0.12～0.30g/㎤ 80～90%
4. 농지의 건조율(윤작) · 작토층의 과습 기간 · 수직배수 감수심 기간 (0.2～0.7m)	 2～3일 5～6일	 3～5일 6～10일	 5일 이상 10일 이상
5. 관수 및 배수기간 6. 지하수의 깊이 7. 지하수의 화학성분 8. 벼수량	2일 미만 0.5～0.7m 광물질 0.5g/ℓ 미만 3～4톤/ha	2～5일 0.2～0.5m 없음 2～3톤/ha	5일 이상 0.2m 이하 없음 2톤/ha 이하

자료 : A. S. Tour, et al, pp. 143

표 4 연해주 농장별 농지개량 상태

단위 : ha, (%)

농 장 별	논면적	정리필요면적		
		총정리	부분정리	계(%)
Kornilov	1,797	230		230 (12.8)
Shmchushny	5,829		2,643	2,643 (45.3)
Vadimovsky	5,775		5,715	5,715 (98.9)
Beryoshovsky	1,107	778		778 (70.2)
Melgunovsky	5,715	2,270		2,270 (39.7)
Avangard	6,812	2,822	3,990	6,812(100.0)
Vlad-Petrovsky	6,548	2,900	900	3,800 (58.0)
Ilinsky	1,073	200		200 (18.6)
Pavlo-Feydorov	1,406		829	829 (58.9)
Novodevichansky	5,800		5,181	5,181 (89.3)
Sivakovsky	6,013		5,950	5,950 (98.9)
계	47,875	9,200	25,208	34,408 (71.8)

자료: A. S. Tour, et al, pp. 143-144에서 작성.

표 5 작물별 단수 비교

구분	연해주	아무르주	러시아전체	연해주기대치	세계평균
쌀	1.13	-	2.58	1.80~2.52	2.52
밀	0.93	1.12	1.36	1.24~1.50	2.46
콩	0.51	0.93	1.13	1.00~1.50	1.97

주 1. 연해주 쌀 단수는 쌀 재배농장의 1990-95년 평균수량(박래경)
2. 연해주 밀, 콩 단수는 연해주 고합농장의 1996-99년 평균수량(고합)
3. 러시아 수량은 1996-99년 평균수량(FAO)
4. 연해주 기대수량은 '극동 쌀 프로젝트'와 '농업기반공사'의 조사자료를 참고하여 임의로 설정함.
5. 세계평균은 USDA ERS PS&D 1996(고재모)

1.4. 농업생산성

○ 연해주의 작물 단수는 세계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러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자연환경이 열악한 이유도 있으나 농자재, 농기계 부족과 생산기반 파괴로 인해 농업이 쇠퇴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연해주의 해외 농업투자 유치 계획

2.1.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제도

○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연방법으로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투자를 보장하고 있음.

○ 연해주에서도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주지사의 명령으로 「외국인 투자협력 및 해외무역발전 연해주 기금의 창립」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1997. 2. 19일 「외국인 투자협력 및 해외무역발전 연해주 기금의 창립」을 연해주지사 명령 제58호로 공포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 조치
- 동 명령의 주요 내용은 연해주에서 환경개선, 농업, 제조업 등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분야별로 2-5년간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임.

○ 한편 러시아 연해주는 해외의 농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업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1996년에 "벼와 콩 생산·가공에 관한 지역 특별 프로그램"을 입안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왔음.
- 2001년 들어 과거의 항카호 주변 벼농사 발전 프로그램을 모두 포괄하여 새로운 "항카호 주변 20만ha 농업개발계획" 프로그램을 입안하

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2.2. 벼와 콩 생산·가공에 관한 지역 특별 프로그램(1996년 입안)

○ 역사적 배경
- 연해주의 벼농사는 1918년에 시작됨.
- 1965년까지 연해주 벼농사는 국가 혹은 주정부의 관심권 밖에서 고려인에 의해 이루어짐(1965년 벼 식부면적은 8,200ha).
- 1966년 "벼농사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이 입안되어 추진
- "극동수리건설"과 "연합극동벼농사설계연구소"가 새로운 관개시스템을 고안하여 건설
- 1984년(1월1일) 총 관개면적은 64,200ha로 확대
- 1985년 47,500ha에서 벼 115,000 톤 수확(벼 2.42톤/ha, 쌀 1.74톤/ha)

○ 1990년대의 벼농사 상황
- 구소련 해체 후 벼 파종 면적이 계속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생산성도 크게 하락함.
- 요인은 생산기반(관개망, 경지평형상태)이 유지보수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점차 폐물화되고 있으며 투입물재가 부족하기 때문임.

○ 단계별 과제
- 당면과제: 현존하는 관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보수, 투입물재 공급

표 6 연해주 벼농사 지표 변화(1986-95)

구 분	단위	1986-90	1991-95	1991	1992	1993	1994	1995
면 적	천ha	42.4	26.6	34.2	35.2	34.2	17.0	12.4
벼 단 수	톤/ha	1.98	1.27	1.86	1.44	0.87	0.87	0.80
벼생산량	천톤	83.9	33.8	63.7	50.7	29.9	14.8	9.90

- 단기과제: 관개체계 개편(극동형포구 → 모듈포구), 경지재정리, 규소비료 시비, 농기계 도입, 항카호 주변의 자연보호조치, 벼-콩 윤작체계 도입, 우수종자 개발과 도입 등을 통해 64,000 ha의 농지를 충분히 이용하고 생산성을 위기이전 수준으로 향상시킴.
- 장기과제: 관개 시스템을 완공하여 15,000 ha 확대, 우수로-순가친스키 지대를 개발하여 130,000 ha 확대

○ 쌀 및 콩의 예상 수요처
- 국내시장 판매
- 해외시장 판매(일본, 남한, 북한, 베트남, 쿠바)

○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주회사 '극동쌀' 설립
- 창립멤버: 연해주 주정부, 나호트카 자유경제구역 중재위원회, 프리모리예 금융 및 산업 그룹, 극동수리건설, 극동수리기획
- 벼농사지대의 주요 기반시설(주요설비, 철도 설치물, 관개시설, 건조시설 등)의 사용권을 '극동쌀'에게 양도
- 기타 관련기관: 연해주 농업과학아카데미, 우스리스크 벼연구소

○ 예산
- 연방예산, 극동지역 연방기구의 자금, 연해주 및 군 예산, 외자
- 러시아의 벼농사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방의 기여도가 높아야 함.

2.3. 항카호 주변 20만ha 농업개발계획[2)]

2.3.1. 사업 목적

○ 2002~2010년까지 연해주에 영주를 희망하여 이주하는 주민(특히, 중앙 아시아에서 이주하는 한국계 러시아인)을 지원함.

○ 농지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연해주의 주요 농산물 생산 능력을 복구함.

---

2) 이 부분은 농업기반공사 자료를 재정리, 요약한 것임(농업기반공사, 러시아 연해주 주정부의 항카호 주변 20만 ha 농업개발계획, 2001.5 참조).

2.3.2. 농업개발계획과 관련된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조치

○ 연해주 주지사의 사업시행 지시(No. 111, 2001. 2. 26)
- 사업발주자: 주정부 농업식량국
- 사업계획수립: 극동 수리 및 토지개량연구소
- 대통령 지시의 시행 점검: 주정부
- 사업계획 수립비: 1백만 루블(약 USD 37,500)

○ 연해주 주지사의 연해주 지방 지역사업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지시(No. 433, 2000. 7. 1)

○ 연방의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개발정책 인가 지시(No.27, 2000. 7. 2)

○ 대통령 연방이민정책 지시(No. 1668, 1994. 8. 9)

2.3.3. 사업계획 개요

○ 사업기간 : 2002~2010년(9년간)

○ 항카호 주변의 논 20만 ha 개발
- 신규 개답 : 15만 ha
- 기존 논의 개보수: 5만 ha

○ 도로, 마을, 상하수도, 전기, 생활부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신설
- 기반시설의 규모는 중앙 아시아에서 이주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인과 이미 이주하였으나 생업이 없는 고려인 약 6만 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사업 지원 기관의 신설
- 주립(州立) 농산물 시장, 국제농업과학생산컨소시움, 한·러 농업과학연구소, 농업기계화연구소, 특수지방은행 등

2.3.4. 사업추진 경과

○ 2001년 추진 계획
- 주정부 농업식량국장은 2001년 4/4분기까지 비준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주정부에 제출해야 함.
- 주정부 농업식량국장은 2001년도 사업계획수립 비용 1백만 루블을 연내에 조달해야 함.

○ 연해주 주정부는 사업계획 초안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수립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한국의 민간단체들과 연해주 고려인재생기금 등과 교섭하였으나, 이들 단체와의 교섭이 여의치 않자 연해주 주정부 측은 블라디보스톡 주재 한국영사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정부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 함(2001. 4).

○ 또한 연해주 농업진출 한국기업 및 단체의 현장 조사시에도 수석 부지사, 농업식량국장, 극동 수리 및 토지개량연구소장, 극동관개시설공사 사장 등이 고려인을 위한 사업임을 내세워 한국정부의 지원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음.

2.3.5.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 문제 상황

- 연해주 지방은 벼와 콩을 기본으로 한 곡물 생산에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또한 이 지방의 노동력과 연해주 지방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을 활용하여 생산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음.
- 추정에 의하면 연해주 벼 생산 가능 면적은 20만 ha임. 1985년까지 최대 64,500ha에 관개시설과 함께 14개의 집단마을이 건설된 바 있음. 연해주의 이용 가능한 토지면적은 255,000ha임.
- 최근 민영화, 사유화 진척과 함께 벼 재배지역이 분할되어 작은 규모의 합자회사(joint company)들이 설립되었음.
- 장비, 연료, 무기질 비료, 제초제 가격의 급등으로 ha당 벼의 단수는 1.25～1.5톤에서 1.0톤으로 감소하였으며, 벼의 재배면적도 크게 감소하였음.

○ 이 계획의 목표

- 2001～2010년 기간 러시아 연방정부의 기본 농업정책방향(지시 #3260p-P1, 2000. 9. 5)에 따른 연방의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개발
- 연해주에서 가장 중시되는 농산물의 수입대체
- 러시아 연방정부 법령(#1414, 1997, 11.10)에 의해 비준된 "연방 이민사업"에 기초한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실현
- 지역 주민의 고용증대.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벼농사만으로 30,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2.3.6 사업의 실현을 위한 기본조건의 충족

가. 생산기술

○ 극동 수리 및 토지개량연구소는 장기적인 통계자료, 생물학적 조건, 토양 기후조건, 콩 · 메밀 · 옥수수 농사 경험 등을 분석, 검토하였음.
- 그 결과, 콩(1.225톤/ha), 메밀(1.1톤/ha), 청예 옥수수(23.5톤/ha)의 작황 달성도는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같은 분석에서 벼의 다수확의 가능성(1.4～2.5톤/ha)은 80% 확률로 추정한 바 있음.

○ 극동과학연구소의 실험생산에 의하면, 벼, 콩, 채소, 사료작물을 위한 적정환경을 창출하는 최신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할 경우, 생산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 극동 수리 및 토지개량연구소는 토지개량 기술을 개선하였고, 연해주 지방과 극동 지방은 이 기술들의 산업적 도입을 확대함.

나. 논의 개발 가능성

○ 최대 벼 생산 가능성
- 벼농사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은 21만 ha이고, 총 벼 생산 가능량은 40만 톤(1.9톤/ha)으로 추정
- 1987년에는 44,000 ha에서 112,000 톤(2.55톤/ha)을 생산

○ 벼 생산 증대를 위한 단계별 조치
- 첫 단계로 벼 생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벼 재배 면적을 42,000 ha까지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두 번째 단계에는 Ussuro-Sungachinsky에 70,000 ha 이상의 대규모 개답이 필요함.

다. 노동력 조성의 적정화

○ 노동력 조성의 적정화는, 러시아 국민에 대한 일자리 충족 우선권과 외국인 노동력의 수급 조화, 그리고 지방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이주자 교환에 기초를 두고 시행될 것임.

○ 이 계획은 고려인을 포함한 이주자들의 영구 거주장소 확보를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준비에 좋은 조건을 창출

2.3.7. 사업 추진 단계

○ 이 사업은 2단계로 구분되어 시행함. 이 계획의 개발과 목적물의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발주자(주정부 농업식량국장)와 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

○ 제1단계
- 기존의 관배수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자본투자
- 농산물 가공 시설과 이주자 거주지 등 생산과 비생산분야에 대한 기금 투자
- 토지개량 준비와 지방의 농업건설산업에 대한 투자

○ 제2단계
- 미완공된 Ussuro-Sungachinsky의 대규모 개답
- Arsenyevka강과 Partizanskaya강 계곡의 기반조성사업 시행

2.3.8 소요 사업비와 재원

○ 사업비의 재원은 연방 예산, 지방정부 예산, 예산외 투자로 구분
- 총 투자비는 10,066백만 루블
- 투자비의 회수에는 3.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표 7 항카호 개발 사업비 소요액

단위: 백만 루블

연 도	투자유치	지방비	연방예산	합 계
2002	569.9	38.3	28.8	637.0
2003	699.4	52.8	33.5	785.7
2004	913.4	67.3	38.6	1,019.3
2005	983.5	81.8	44.1	1,109.4
2006	1,076.7	96.3	50.5	1,223.5
2007	1,066.5	110.8	57.4	1,234.7
2008	1,120.8	125.3	65.5	1,311.6
2009	1,163.3	139.8	74.5	1,377.6
2010	1,132.3	150.0	84.8	1,367.1
계	8,725.8	862.4	477.7	10,065.9

2.3.9. 사회경제적 효과

○ 농업생산증가
- 2005년 : 벼 3.7만톤, 콩 3.54만톤
- 2010년 : 벼 9.87만톤, 콩 5.6만톤

표 8 연도별 곡물 생산 추정치

단위: 천톤

연 도	벼	콩
2002	14.4	24.1
2003	18.9	27.9
2004	27.0	31.7
2005	37.0	35.4
2006	49.3	39.8
2007	68.4	47.1
2008	82.9	49.4
2009	90.5	52.8
2010	98.7	56.0
계	487.1	364.2

3. 제도적 환경

3.1. 조세 관련 제도

○ 연방세 및 부과금
- 약 16개 종류가 있음.

- 부가가치세, 간접내국소비세, 이윤세(기업 및 단체), 개인소득세, 사회복지종합세, 국세(상품세, 재산세, 인지세 등), 관세, 자연자원이용료, 미네랄 원료 기반 재생을 위한 공제금, 상속 및 증여세, 유가증권세, 도로이용 및 차량보유세, 게임유기업세, 물이용료, 면허사용료, 외환구매세

○ 주세 및 부과금
- 약 5개 종류가 있음.
- 기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산림소득세, 교육기관 보조금, 판매세

○ 지방세 및 부과금
- 약 19개 종류가 있음.
- 토지세, 개인재산세, 개인의 기업활동 등록세, 경찰, 복지, 교육유지세, 자동차, 기계, 컴퓨터 판매세, 개소유세, 양조면허세, 복권 및 경매면허세, 아파트권리세, 주차세, 광고세, 경마세, 경마당첨세, 경마참가세, 증권거래세, 영화상영권리세, 정원청소세, 게임유희장개설세, 휴양지생산용시설 건축세

3.2. 토지 관련 제도

○ 현재 국가 두마(하원)에서 개정 중에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러시아의 땅을 매매할 수 있게 허용함.
- 매매 허용 토지는 전체 토지의 2.1%이며, 해당지역은 도시지역, 산업·교통·통신 관련 건물들이 운집한 지역, 그리고 개인 장원의 농토임.

○ 토지의 소유권과 임차권
- 소유권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면 즉시 융자해 주는 등의 점에서 유리함.
- 임차권이 있을 경우도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얻을 수 있지만 구비서류가 많고, 시간이 걸림.

3.3. 노동 관련 제도

○ 노동법은 현재 국가 두마에서 개정 중에 있음.
○ 현재 국가 두마에서 1독회를 완료하였는데, 4가지 개정안 가운데서 정부안이 채택되었음.
○ 노동법은 2002년 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3.4. 환경보호 관련 제도

○ 구사회주의 시대부터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규제해 왔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움.
○ 러시아연방 정부의 환경규제법에 대한 입장
- 사회주의시대에는 체제유지 위주로 입법이 되어있음. 현재는 시장경제에 맞도록 인간 위주로 전환되어야 하는 데 아직도 그렇지 바뀌지 못하고 있음.

제 3 장

연해주 농업협력사업 기본구상

1. 한국의 해외농업개발 사례와 시사

1.1. 1980년대 이전의 해외농업개발

○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은 1962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되면서 농업이민 송출 형태로 시작됨.

○ 정부는 1968~81년 기간 중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등 남미 5개 지역에서 정부가 직접 농장개발을 시도했으나 대부분 실패

- 총 면적은 25,304ha이며, 총 투자금액은 459만 달러에 달함.
- 떼노 농장은 1980년에 구입했으나 칠레 이민법에 대한 무지로 이민을 성사시키지 못한 채 실패함.
- 얏따마우까농장은 2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으로 구입했으나 토양 중의 염분 과다로 개발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

○ 산 하비에르농장의 경우만 현재까지 경작되고 있음. 이 농장은 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상환이 끝나는 1997년 말경 처음부터 쌀 농사에 전념해 온 현재의 경작자에게 이전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농업이민, 농산물 개발수입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음.

표 9 1980년대 이전 남미지역의 해외농장개발 실태

농장명	얏따마우까(아르헨티나)	떼노(칠레)	산 하비에르(아르헨티나)
면적(ha)	20,894	185	2,714
구입일자	1978.8	1980.12	1981.3
구입가격($)	2,115,000	532,900	1,912,235
소유권	KOICA	KOICA	KOICA
경 과	- 실패 · 79년 영농부적지 판명 · 장기간 방치	- 실패 · 칠레정부의 입국 불허 · 1988.5부터 임대중	- 성공 · 연간 미곡생산 1,600톤 · 육우 2,500두 사육
실패(성공) 요인	· 영농 부적격지 구입	· 현지법에 대한 무지	· 농업인프라 양호 · 성공적인 영농 사례

주 : 이밖에 소규모 투자 경험으로 산페드로농장(11,000달러)과 루한농장(19,000달러)이 있음.

1.2. 최근의 해외농업개발

○ 최근의 해외농업개발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음.

- 대륙개발의 흑룡강성 개발사업은 1차 농업개발사업(38,000ha) 추진중 자본 부족으로 중도 포기 상태임.
- 고합그룹이 1995년부터 시작한 러시아 연해주와 아무르주 농업협력사업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상업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
- 삼성그룹은 1996년에 호주에서 초지를 매입하여 축산업에 투자했으나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기타 민간단체들이 연해주에서 영농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적을 고려인 혹은 북한 지원에 두고 있음.

○ 민간기업이 해외농업투자사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음.
-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경험과 사전 정보가 부족함.
- 생산물의 판로가 없음.
- 자본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함.

○ 그간 정부와 민간이 추진해 온 해외농업협력사업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중국, 러시아 등 전환기에 있는 주변 강대국에 대한 농업협력사업은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움.
-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농업협력사업은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이라는 정치경제적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함.
- 이러한 구상 속에서 연해주 농업협력이 논의된다면 민간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함.

2. 한·북·러 3국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2.1. 한국-러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 한러 경제협력 현황

○ 교역 및 투자
- 한러간 교역규모는 1997~98년간 감소세를 보였으나 99년 하반기부터 교역규모가 회복되고 있음(1999년 22억 달러, 2000년 28.4억 달러).
- 2000년말 현재 한국의 대러 투자 총액은 1억6천만 달러이며, 러시아의 대한 투자는 약 1천1백만 달러임.

○ 나호트카 지역에 100여만평 규모의 한러 협력공단 조성 추진
- 섬유, 목재가공, 전기·전자 분야 등 100개 업체 입주 목표
- 1995. 3월 토지공사와 나호트카 행정위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1999. 12월 동 협정에 대한 우리 국회 비준 완료

- 러측은 현재까지 비준 지연

○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에 참여,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의 국내 도입 추진

- 이르쿠츠크에서 몽골과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까지 총 4,100km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것으로 투자비는 약 110억 달러 예상
- 2000. 11월 한·러·중 3국간 동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일반협정에 서명했으며, 타당성 조사작업에 약 2년, 가스전 개발 및 배관망 건설에 4~6년의 기간 소요 예상
- 가스의 국내 도입은 2008-2010년경 가능할 전망이며, 국내 도입규모는 연간 700만톤 예상(매장량 1조 4천억㎥)

○ 남북한 철도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

- 2000. 12월 러시아 철도부 대표단 방한시,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간 협력에 관한 합의문 서명

○ 한국의 대러 경협차관 상환문제

- 1993년 만기 도래분 미상환액(약1억불)은 2001년말까지 상환 예정
- 1994년이후 만기 도래분(약18.3억불)중 일부는 현물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까운 시일내에 양국간 협의를 통해 상환기간 및 방법에 대한 협정 체결 추진

□ 한러 경제협력의 전망

○ 러시아 시장의 커다란 잠재력에 기초한 한러 경제협력의 중요성은 매우 큼. 그러나 양국의 경제협력사업은 진전되지 않고 있음.

- 경협차관 미상환 문제가 양국간의 경협 확대에 걸림돌이 되었음.
- 1998년이래 한국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해 해외투자가 위축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나호트카 공단 건설,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과 같은 대규모 경제협력사업도 양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정체 상태에 빠져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당분간 양국간의 경협사업은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 한러 경협 문제를 반드시 경제적 이해만의 문제가 아닌 북한, 중국

등 다자간 지역협력의 틀 속에서 고려하고,
- 비교적 작은 규모의 경제협력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접근법이 바람직함.

2.2. 북한-러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 북러 경제협력 현황

○ 1990년 구소련의 붕괴와 러시아의 체제전환을 계기로 북·러간 경제협력은 급격히 위축되었음.
-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시혜적인 성격의 경제협력을 중단했으며, 대북한 무역에서 국제관행에 의한 경화(硬貨)결제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러시아 상품에 대한 구매력은 급격히 감소했음.

○ 1999년 들어 북한의 경제사정이 다소 호전되면서 대러 교역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연간 교역규모는 최근까지도 1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그러나 199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1/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북·러간 경제현안

○ 철도협력문제
- 러시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을 추진해오고 있음.
- 최근 러시아는 북한 내 철도시설의 현대화에 2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행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으며, TSR-TKR 연결이 북한에 매년 1억 달러에 달하는 순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음.

○ 북한 내 생산설비의 현대화
- 북한은 노후한 산업생산시설을 보수하고 현대화하는데 러시아의 기술 및 부품을 필요로 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3차에 걸친 북·러 정부간 경제협력위원회에서 구소련 지원 생산설비의 보수와 현대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음.

○ 극동지역 자원개발

-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한 극동지방의 자원개발은 1990년대의 경제협력 위축기 동안에도 지속되어 온 북·러간의 경제협력 현안임.
- 벌목공 파견을 통한 임업자원 개발이 대표적인데,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인력은 약 30,000명에 이름.
- 북한은 노동력 해외 파견이 주요 외화수입원이 되고 있어 더욱 많은 분야에 노동력 진출을 원하고 있음.

○ 수산업 부문에서의 협력

- 러시아 극동지역 어장에서 공동어획과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북한 내 러시아 선박수리장 건설, 수산물 가공공장의 합작건설 등도 양국간 경제협력 현안 거론되고 있음.

○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 문제

- 약 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對러시아 채무상환 문제는 최근까지 북·러 경제협력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음.
- 양국은 최근까지 채무상환 일정과 채무액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임.

□ 북러 경제협력의 전망

○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경제가 다소 안정되고 우호협력의 분위기로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정상회담 기간 중에 산업협력과 극동지역의 자원개발 분야에서 협력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됨.
- 북한의 채무 상환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한북러 3자협력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음.

- 북·러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함.
- 특히 극동지역에서 자원개발협력이나 농업협력사업 등에서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자원이 결합된 경제협력사업의 가능성을 모색.

3.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의 의의와 추진목적

3.1.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의 의의

○ 시대별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업 추진
- 1970년대 초 국제적인 식량위기가 발생하면서 해외식량생산기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어, 식량확보와 농업이민 등 다목적으로 정부주도의 해외농업개발 추진
- 1980년대 들어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여론과 70년대 해외농업개발 실패로 해외농업개발을 금기시 함.
- 1990년대 들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남북 농업협력과 북한 지원 필요성, 통일대비 식량생산기지 확보 필요성이 대두하여, 민간을 중심으로 중국과 연해주 농업개발 추진

○ 주체별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기본 인식
- 민간은 상업적인 목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해당국과의 경제협력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
- 정부는 과거 식량확보, 농업이민 등의 목적에서 통일대비, 북한지원 목적으로 인식 변화

○ 전체적으로 과거의 해외농업개발은 식량의 개발수입에 초점이 있었으나 점차 북한 관련 변수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됨.

○ 연해주는 남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 러시아가 남북한 협력에 지렛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해주 3국 농업개발 협력사업의 의의가 있음.
- 북한 관련 변수가 중시된다면 추진 주체는 정부임.
- 공익적 경제협력사업으로서 의의가 있음.
- 수익성 확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

3.2.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의 추진 목적과 조건

3.2.1. 추진 목적

○ 연해주 3국 농업협력사업은 복합적인 목적 하에 추진
- 다양한 목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 필요

○ 첫째, 단기적이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북 지원임.
- 연해주 농장을 개발하여 대북한 지원용 식량 생산
- 북한 노동력이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남북한 협력 모델 개발

○ 둘째,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 해외식량생산기지 확보
- 통일시 북한주민의 식량 수요량은 폭발적으로 증가 전망
- 통일후 곡물가격 폭등 현상을 억제하는 해외식량생산기지 확보

○ 셋째, 연해주에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민간기업과 단체를 간접적으로 지원
-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축적되는 정보 및 노하우 제공
- 농자재 조달 및 농산물 유통에서 협력하여 규모의 경제 달성
- 북한에 식량지원시 협력 가능

○ 넷째, 러시아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대북한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유휴농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주민 고용 증대
- 러시아산 농자재를 구입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업생산기술을 교류하여 지역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 다섯째, 부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목적
- 우수한 국산 농업기자재 및 플랜트를 농장에서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산 농업기자재의 러시아 시장 개척 기지로 활용
- 여러 종자에 대해 연해주 현지 적응시험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연해주를 대상으로 한 종자 개발 및 수출 기반을 조성
- 농장에서 고려인을 고용하여 이주 고려인의 연해주 정착을 지원

3.2.2. 추진 조건

○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은 한국, 북한, 러시아 3국이 복잡하게 관련되므로 사업추진의 각 단계에서 거래적비용(transaction cost)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초기 투자소요액이 크며,
- 농장 운영의 수익성은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의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음.
- 북한에 대한 생산물 지원 조건 설정
- 정부의 추진 의지와 비용부담 의지
- 기진출 민간단체 및 기업과의 협력
-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 제3의 생산물 판로 확보

4. 연해주 농업협력사업 기본구상

4.1. 협력사업 주체와 협력대상

○ 협력사업의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
-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은 북한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한다는 뚜렷한 정책목표 하에서 추진됨.
- 따라서 수익성 확보는 지속성(sustainability)을 높이는 수단이며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함.

○ 협력사업 추진 단계별 대행주체(agent)
- 타당성조사, 시범농장 설계, 시범농장 건설은 농업기반공사가 담당함.
- 시범농장에서는 다양한 경영형태와 생산형태를 실험해야 하는 공익적 기능이 강조됨. 따라서 공익적 기능이 강한 공기업(농업기반공사, 농산물유통공사 등)이 운영을 대행하는 것이 타당함.

-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본 사업 단계에서는 경영규모가 확대되며 경제성 확보 문제가 중심과제로 대두됨. 이 단계에서는 민간기업이 경영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함. 그러나 시범농장 운영과정에서 노하우를 축적한 공사의 경영능력도 무시될 수 없음. 따라서 시범사업 종료 시점에서 시범사업 대행 공기업 평가결과와 본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협력 주체
- 한국측: 농림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진출업체 및 단체
- 북한측: 북한정부
- 러시아측: 러시아 정부, 연해주 정부, 군청, 농장, 고려인단체

4.2. 농업협력사업 규모

○ 규모 설정을 위한 고려사항
- 첫째, 농업협력사업의 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해결, 북한의 참여 유치, 북한의 참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연해주)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함.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연해주 정부의 관심분야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협력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연해주 농업협력을 통한 대북지원 형태는 노동자 고용과 생산물 지원 등 두 가지 형태임.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셋째, 우리측의 고려사항으로 투자자금의 조달능력, 대행주체의 경영능력 등이 있으며, 남북한 관계 악화시 북한으로 지원되지 않은 생산물의 처리 능력도 고려해야 함.

○ 러시아 연해주 정부의 농업협력에 대한 관심분야
- 연해주 정부는 "항카호 주변 20만ha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 1단계: 항카호 주변 64,000ha의 농업기반 개보수 프로그램
- 2단계: 총 14만 5천 ha의 추가적인 농업개발 프로그램

○ 북한의 입장에서 본 지원규모

- 첫째, 노동자 고용을 통한 지원
  - 국내 고용기회가 적은 저개발국의 경우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외화를 취득하기 위해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하려 노력함. 북한도 러시아에 벌목공을 파견하여 필요한 외화와 원목을 취득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이라 할지라도 남측이 추진하는 농장개발사업에 북한의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위험부담을 안게 됨.
  - 따라서 북한이 남측의 고용을 수용하려면 경제적인 이득이 정치적 위험부담을 초과할만한 규모이어야 함.

표 10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규모(1995~2001.6)

단위: 만달러

기 간	지원 규모	비 고	경 유
1995	23,200	- 국내산 쌀 15만톤	직 접
1996	305	- 혼합곡물 3,409톤(200만달러) - 분유 203톤(100만달러) - 기상자재(5만달러)	WFP UNICEF WMO
1997	2,667	- 혼합곡물 9,852톤(600만달러) - ORS공장비용(34만달러) -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1,053만달러) - CSB, 분유, 의료품등(980만달러)	WFP UNICEF WFP UN기구
1998	1,100	-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WFP
1999	6,675	- 비료 11.5만톤(2,825만달러) - 비료 15.5만톤(3,850만달러)	직 접 직 접
2000	16,863	- 비료 30만톤(7,863만달러) - 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 차관지원 (9,000만달러)	직 접 직 접
2001.6	6,540	- 옥수수 10만톤(1,100만달러) - 비료 20만톤(5,440만달러)	WFP 직 접
계	57,350		

주 1) 1999년 한적의 비료지원과 2000년의 곡물 차관지원도 포함
2) 2001년의 환율은 1,250원/달러 적용

자료: 통일부

- 둘째, 생산물의 지원
  -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소규모 협력사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는 협력사업임.
  - 따라서 그 규모를 고려할 때 1995년이래 수행해 온 정부차원 대북 지원 규모를 참고할 수 있음(<표 10> 참조).

○ 한국측의 입장에서 본 농업협력사업 규모
- 북한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면 농업협력사업 규모가 클수록 목적 달성에 유리함.
- 그러나 투자소요자금, 대행주체의 대농장 경영경험, 생산물이 북한으로 지원되지 못할 경우 생산물의 판로확보 곤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연해주의 대규모 농업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은 위험함.
- 따라서 먼저 비교적 소규모의 시범농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향후 농업개발협력의 규모와 방안을 타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

4.3. 농업협력사업 접근 방안

○ 이원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 ① 시범농장 운영과
- ② 항카호 주변 20만ha 개발계획 협력을 구분하여 접근함.

4.3.1. 시범농장 개발 및 운영

○ 북한측이 노동자를 파견할 의사가 있다면 시범농장 규모에서도 작목 선택에 따라 많은 노동력 고용이 가능함. 따라서 우선 시범농장을 설립하여 운영

○ 시범농장은 농지를 임차하여 100% 단독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나, 대규모로 농지를 임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측이 경영권을 가지는 합작을 추진함.
- 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범재배방식 수행
- 러시아 국내시장 및 수출시장을 조사하여 판로 확보
- 농산물 가공, 농기계 이용조직 등 수익모델 창출
-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의 관계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제도적 관행을

정착시킴.

- 북한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타진하고, 북한이 연해주 3국 농업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개발
- 시범농장 규모는 최소한 벼농사 부문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생산 및 유통 단위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인근 농장의 생산물과 함께 소규모 RPC 1기를 가동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4.3.2. "항카호 20만ha 개발계획(2002～2010)"에 대한 협력

○ 항카호 20만ha 개발계획에 한국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해야 함.

- 첫째, 시범농장 운영과정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 둘째, 남북한 협력모델이 개발되고,
- 셋째, 수익성이 부분적으로 확보되고,
- 넷째, 대북한 식량지원이 정례화되고,
- 다섯째, 러시아가 3국 농업협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될 경우

○ 항카호 20만ha 개발계획에 대한 협력 방식

- 시범농장을 운영하면서 협력 가능성과 경제성을 타진함.
- 직접적인 참여 혹은 공동투자사업은 위험성이 큼.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발협력차관의 형태로 참여를 고려함.
- 20만ha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 3억5천만 달러(연해주 정부)
- 1단계 64,000ha의 생산기반 개보수 사업비는 7천만 달러 미만으로 추정됨.
- "항카호 20만ha 개발계획(2002～2010)"에 대해 협력하기로 결정한다면, 1단계 사업에 5천만 달러(총투자의 70%)의 차관지원으로 충분함.
- 차관 지원을 지렛대로 한국측 농장의 운영 확대에 주정부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연해주에서 남북한 농업협력이 성사될 수 있도록 러시아가 노력하도록 독려할 수 있음.

4.4. 시범농장 설립을 위한 농지확보 방안

4.4.1. 합작법인 설립

○ 한국측은 경영비를 출자하고 러시아측 농장은 토지사용권과 농기계, 설비 등을 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경영
○ 현지인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어려움.
○ 이주 고려인, 북한노동자의 고용이 곤란함.
○ 다양한 작목, 다양한 생산방식, 여러 채널의 농산물 출하방식, 여러 형태의 고용방식과 경영방식 등을 실험해야 하는 "시범농장" 형태로서 단독경영 방식에 비해 불리함.
○ 불가피한 경우 우리의 지분을 높여 경영권을 확보

4.4.2. 단독경영1(농장으로부터 토지 임차)

○ 현지법인이 연해주 농장으로부터 일정 면적의 농지와 부속설비를 임차하여 단독으로 경영하는 방식
○ 농기계, 생산설비, 관개시설 등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
○ 영농환경, 시장환경, 제도 등 현지 사정에 대한 무지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임. 유능한 현지 경영자를 고용하고, 유능한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함.
○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시범농장"으로 적합한 방식이며, 고려인이나 북한 노동자 고용이 자유로움.

4.4.3. 단독경영2(주정부 혹은 군으로부터 토지 임차)

○ 현지법인이 연해주 정부 혹은 군으로부터 일정 면적의 농지와 부속설비를 임차하여 단독으로 경영하는 방식
○ 기타 사항은 2.4.2 형태와 동일함.

※ 2.4.2 형태와 2.4.3 형태 중 선택은 농지의 이용권 분배과정에서 연해주 정부나 군에 귀속된 농지의 성격에 관한 연구를 참고해야 함.

4.5. 시범농장 운영 방향

○ 시범농장 적지 선정
- 연해주 정부와 군의 추천을 받아 3~4개소의 유력한 지구를 개략 조사하여 시범농장 적지를 선정
- 시범농장 적지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제일 조건
  - 대규모 농지를 장기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지역
  -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
  - 초기 생산기반 투자 소요가 적은 지역

○ 시범농장 경지 이용 배분의 예(총 2,000ha 기준)
- 1,800ha는 벼, 콩, 휴경 등으로 러시아식 윤작 실시
- 50ha는 벼 이앙재배, 담수직파재배 실시
- 50ha는 채소류, 과채류 노지재배
- 10~20ha는 채소류, 과채류 하우스재배와 시험포로 활용
- 시범농장 운영 과정에서 변경

○ 고정자본 투자
- 농업기반: 경지재정리, 농장내 관개시설 보수, 도로 정비
- 건물: 간이 사무실, 숙소, 창고, 저온창고, 농기계 창고
- 설비: 소규모 RPC, 비닐하우스(한국산)
- 농기계: 대형 트랙터와 부속작업기, 대형 콤바인, 트럭, 트레일러 등(이상 러시아 혹은 미국산), 중소형 트랙터와 부속작업기, 경운기와 부속작업기, 이앙기, 콤바인, 밭 관리기와 부속 작업기, 차량, 양수기, 농기구, 이산화탄소 발생기, 온풍기 등(이상 한국산)

○ 북한 노동자 고용
- 남북한 당국자 회담 혹은 러시아측의 중재를 통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견한 노동자를 고용
- 현지인, 고려인 등과 균형을 맞춰 고용
- 북한 노동자의 고용조건은 협상을 통해 수립하되, 현지노동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

- 이앙 방식의 벼 재배와 채소, 과채류 재배에 투입
- 초기에는 성과급 노동자로 고용하며 점차 도급제로 이행
- 북한 노동자 고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3국간에 해결책과 책임소재 명시

○ 생산물의 처리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상 농산물은 쌀, 콩 등 곡물류이며, 지원 방식은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구입, 북러간 철도를 이용하여 북한으로 직송
- 국내 수입: 대상 농산물은 쌀, 콩 등 곡물류이며, 남북한간에 정치적 문제 때문에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중단될 경우 국내 수입
- 임금 지불: 대상 농산물은 농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쌀, 콩, 채소, 과채류)이며, 생산물의 일부를 임금노동자 혹은 도급제 노동자에게 현물로 지급
- 현지시장 출하: 대상 농산물은 채소, 과채류이며, 현지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지 농산물 유통업자와 계약을 하는 등 유통경로를 새롭게 개척해야 함.

제 4 장

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전략

1. 1단계: 연해주 정부 접촉과 조사대상 농장 선정

○ 연해주 당국자에게 3국 농업협력사업 추진 의향을 설명
- 우리측이 연해주 농업에 투자함으로써 한·북·러 3국간의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3국간의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는 내용을 연해주 정부 당국자에게 설명
- 그 일환으로 우선 시범농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을 간략히 설명
- 우리측이 희망하는 시범농장의 운영형태는 우선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이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하는 형태임을 설명

○ 연해주 당국자로부터 연해주 정부의 농업에 대한 설명과 자료 수집
- 연해주 정부는 연해주의 농업정책, 향후 농업개발계획, 재원조달 방안 및 외자유치 계획 등 우리측이 참고할만한 정책, 계획 등을 설명 받고 관련 자료를 수집
- 연해주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문서와 자료는 즉시 번역하여 숙지함.

○ 시범농장 후보지에 대한 의견 교환과 추천
- 우리측의 관심 농장에 대한 러시아측의 의견과 추천을 받고, 각 농장의 장단점에 대해서 토의함.

① 철도 통과 농장

▪ 아방가르드 농장(7,500ha), 멜구놉스키 농장(5,700ha),

블라지미르-빼뜨롭스키 농장(6,300ha), 루고보이 농장(3,000ha), 빼뜨로비찬스키 농장(4,900ha)

② 1997년에 조사한 3개 농장

▪ 노보제비찬스키 농장(5,400ha), 씨바곱스키 농장(6,000ha), 노보셀스키 농장(7,200ha)

- 이들 8개 항카호 주변 농장 외에 러시아 측에서 추천하는 농장과 농지에 대해 개략적 소개와 추천을 받고, 각 농장의 장단점에 대해서 토의함.

○ 예비 타당성 조사 농장 선정과 협조

- 우리측 관심 농장과 러시아측 추천 농장에 대한 ① 도면상 검토, ② 진출업체 관계자의 조언, ③ 해당 농장의 의향 등을 토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농장을 2~3개소로 선정
- 예비 타당성 조사 농장 선정 사실을 연해주 정부, 군청, 해당 농장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함.

2. 2단계: 후보농장 선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단 구성과 조사계획

- 조사단은 농업기반공사가 작성한 계획에 따라 구성
- 조사 내용과 방법은 조사단에 소속된 전문가의 계획안에 의거

○ 연해주 농업투자환경 및 타당성 조사 대상 농장에 대한 사전 정보의 입수와 활용

- 1997년 연해주 농업투자환경 조사 결과의 활용과 갱신(제도)
  - ▫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정책과 법령
  - ▫ 노동관련제도
  - ▫ 조세와 공과금 관련제도
  - ▫ 토지 및 부동산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제도
  - ▫ 금융제도
  - ▫ 농산물 및 농업기자재 수출입 관련 제도(금번 조사에 추가)

- 1997년 연해주 농업투자환경 조사 결과의 활용과 갱신(유통)
  - 농업기자재 조달시장 현황
  - 곡물, 채소류, 과채류 유통 현황
  - 곡물, 채소류, 과채류 처리 및 수송비
  - 곡물 수출시 통관비용 및 절차
  - 농업기자재 수입시 통관비용 및 절차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농장이 1997년 조사 농장 혹은 한국업체 및 단체가 진출해 있는 농장과 중복될 경우, 타당성 조사 이전에 가용 정보를 최대한 입수하여 분석

○ 유능한 통역요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확보 가능성 타진
- 유능한 통역요원을 확보하여 활용, 새로운 자료 입수시 즉시 번역하여 활용
- 유능한 현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물색함.

○ 후보농장 선정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
- 대규모로 농지를 임차할 수 있는 지역
-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
- 초기 투자 소요가 적은 지역

○ 후보농장 선정
- 투자대상 농장들의 차이 분석
- 농장간 비교와 후보농장 선정

3. 3단계: 시범농장 후보지 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단 구성과 조사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시와 같음.
- 조사단은 농업기반공사가 작성한 계획에 따라 구성
- 조사 내용과 방법은 조사단에 소속된 전문가의 계획안에 의거

○ 타당성 조사 및 현지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임시사무소 개설
-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는 전체조사팀이 사무소 요원을 겸임하고, 타당성 조사팀이 철수한 이후에는 현지 통역 중 유능한 인물을 임시사무

소 요원으로 임명
- 임시사무소의 역할은 보완조사, 정부간 협의 및 연락업무 수행, 현지 법인 설립 준비작업 수행

○ 토지개발 분야 중점 조사 내용
- 사업시행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 측량, 설계비 및 공사비 산정
- 수리시설 개보수비 및 농지개선 공사비 산정
- 부대시설 개보수비 산정
- 농장 내 타기관 소유, 즉 국가, 주, 군, 타기업 및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 파악과 이용 조건 조사

○ 농업분야 중점 조사 내용
- 시범농장 세부 영농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 채소생산 저해요인 분석: 병충해 발생소장, 기상재해 피해율
- 연해주 농업관련 기상자료 정밀 검토
  ▪ 호롤군의 년차별 일사량, 수면증발량, 최대순간풍속, 1회적설심 등
- 시범농장에 적합한 시설형태와 소요자재 검토
- 토지 이용면적별 농기계 투입계획 작성

○ 유통분야 중점 조사 내용
- 시범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연해주 유통 절차 및 비용 추정
- 시범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대북 수송 절차 및 비용 추정
- 연해주의 농산물 수출입관련 제도 및 관세체계 조사
- 연해주의 농업기자재 유통 체계 조사

○ 제도분야 중점 조사 내용
- 농업개발투자 관련법 및 제도개요와 관련된 ①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와 법, ② 조세제도 및 세법, ③ 토지 관련 제도 및 법, ④ 노동 관련 제도 및 법, ⑤ 환경보호 관련 제도 및 법 등의 자료 분석
- 시범농장 설립 절차 조사
- 자문변호사 및 자문공인회계사 선임

○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 장단기 경제성 분석

- 시범농장 개발계획 작성

4. 4단계: 시범농장 설립

4.1. 현지법인 설립과 준비

○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주체를 선정함.
-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자는 시범농장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기관(공기업)이며, 현지법인 대표자는 그 기관에서 임명한 자로 함.
- 즉, 실질 투자자인 대한민국 정부를 대행하는 자(예를 들면 농업기반공사 등)가 러시아 연해주의 현지법인에 투자(설립)하고 대표자를 임명하는 방식임.

○ 현지법인 설립을 전후하여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현지 진출업체, 현지인, 현지 변호사, 현지 공인회계사와 비공식 혹은 공식적인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진출업체, 연해주 정부, 군청의 전문가로 비공식 자문 그룹을 구성하여 수시로 자문을 구함.
- 현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와 계약하여 공식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음.
- 자문단 및 변호사의 자문 하에 현지법인 설립(정관 작성과 등록)

4.2. 시범농장 적지 임차계약

○ 자문단 및 변호사의 자문 하에 농지 및 부속시설 임차 계약
- 농지 소유권 및 이용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음.
- 러시아에서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체는 주정부, 군청, 농장 등임.
- 경우에 따라 1개 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각 농지의 상태와 부속 시설에 따라 계약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음.

○ 임대차 상대방에 따른 계약조건 전망과 선택

- 주정부, 군청, 군부 등 국가기관 보유농지를 임차하는 경우, 토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임차료가 매우 저렴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현지농장의 농지를 임차하려 할 경우 농지 및 부속시설 임차료가 정부기관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음.
-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① 한국측이 느끼는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의 정도, ② 해당 농지 및 부속시설의 상태와 가치 평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다면 임차료가 비싸더라도 상태가 좋은 농지를 선택해야 함.
- 임차료 지불은 가급적 짧은 기간 단위로 할수록 유리함.

4.3. 농지임차의 대안으로서 재임차 방식과 합영농장

○ 대안1: 재임차

- 대규모 농지를 이미 임차하여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측 단체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거나 재임차하는 방안
- 한국측 단체가 재임대 의사가 있고, 러시아 국내법으로 문제가 없으며, 러시아측 토지 임대자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임.
- 그러나 러시아와 한국측 간단체간의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면 추진 불가

○ 대안2: 합영농장 설립

- 한국측 현지법인과 현지농장이 공동으로 새로운 농장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임. 이 경우 최대한 한국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계약함.
- 그 방안으로 현지농장의 출자는 토지와 농업생산기반, 농장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부속건조물만 인정함으로써 현지농장의 출자지분을 최대한 낮춤.

- 반대로 한국 투자규모를 늘려야 함. 영농초기 기간의 경영비와 함께 농기계구입 및 생산기반 확충 등에 대한 투자도 명시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토록 노력
- 가능한 한 한국측 투자는 가급적 3~4년의 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계약함.

4.4. 시범농장 설계 및 운영 준비

○ 핵심요원 임명 및 고용
- 대표자 임명
- 상주직원 임명(회계사무 등 관리담당과 영농담당)
- 국어 소통 가능한 현지인 부사장 고용(관리 및 영업 담당)
- 농업기술에 정통한 현지인 부사장 고용(생산업무 담당)
- 현지인 전문인력 고용(통역 및 대외업무 담당)

○ 농업생산기반 확충 실행계획 수립
- 연차별 경지재정리 및 경지정리 실행계획
- 연차별 관개배수로 정비 실행계획
- 연차별 시설 개보수 및 신축 실행계획
- 연차별 농기계 도입 실행계획

○ 시범농장 설계
- 농업기반공사가 설계
- 시범농장의 규모, 경지 배분 실행계획, 농업생산기반 확충 실행계획 등에 맞추어 시범농장 설계
- 설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 농장 임원, 자문단, 농진청, 농협

○ 시범농장의 경지 배분 실행계획 수립
- 러시아 연해주 방식의 벼, 콩, 휴경의 윤작 지구
- 벼 이앙재배, 담수직파재배 실시 지구
- 채소류, 과채류 노지재배 및 하우스 지구
- 품종 및 재배방식 비교 시험포

○ 법인 설립(정관 작성과 등록)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관을 작성하여 법인 설립신청 및 등록

5. 5단계: 시범농장 운영

5.1. 노동자 고용

○ 상시 노동을 위한 현지인 고용의 경우 도급제 고용방식을 활용
- 임금과 도급제를 통한 수입이 균형될 수 있도록 조정
- 전문 분야별 임금 및 도급급여 수준은 ① 러시아 농장의 사례를 참고하고, ② 농기계 여건, 비료 등 농자재 투입여건이 러시아 농장에 비해 유리하므로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 분배비율 결정

○ 농작업이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데 따른 일시 고용 노동자는 전액 임금제로 고용
- 러시아 농장의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

○ 상시 노동을 위한 현지인 고용의 경우 도급제 고용방식을 활용하고, 농작업이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데 따른 일시 고용 노동자는 임금제로 고용
- 임금과 도급제를 통한 수입이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조정
- 전문 분야별 임금 및 도급급여 수준은 ①러시아 농장의 사례 ②농업기반, 농기계, 농자재 여건 ③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북한과의 협력 및 노동자 고용
- 북한 당국의 노동자 파견 의사에 따라 고용이 가능함. 따라서 시범농장 운영 초기에는 북한 노동자의 고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 당국과 협의시 북한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함.
  ▪ 북한이 시범농장 내에서 반독립적인 형태로 농업경영에 임하는 협력사업 형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의사 타진과 접촉은 다양하게 유지

① 남북한 당국자 회담을 통해 의사 타진
② 북한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민간단체, 재미동포 등을 통해 의사 타진
③ 러시아 당국을 통해 의사 타진

- 고용 형태는 임금과 도급제를 병행
- 고용 부문은 이앙식 벼재배, 채소 및 과채류 재배 부문
- 러시아 이민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5.2. 농업기자재 조달

○ 러시아 연해주에서 농자재 조달은 다음과 같이 여러 방식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단기현물융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기계의 경우 리-스 방식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장의 현금구매
- 보조금 지급(비료, 농약에 한해 곡물수매시 50%의 가격보조)
- 농업은행을 통한 '식량공사'의 현물 융자
- 리-스회사를 통한 임차(농기계)
- 외국과의 합작을 통한 농자재의 현금조달 혹은 수입조달

○ 비료는 대개 각 군에 1개소씩의 비료 공급소(주식회사)가 공급함.

- 농장의 신청에 의해 '식량공사' 혹은 농업은행(기타 상업적 은행도 가능)이 농자재 공급에 대한 현물융자의 양을 결정하며, 이를 비료공급회사에 통고하여 공급됨.
- 농장의 상환능력 부족으로 비료 시용량은 극히 적음.

○ 농약은 '체르니고프카'군에 위치한 '농업화학 주식회사(민영)'에서 연해주 전체에 대해 독점적으로 공급함.

- 농장에 대한 공급절차는 비료의 경우와 같으며, 사용량 역시 적은 수준임.

○ 대부분의 종자는 농장에서 자체 조달하지만, 신품종의 채택이나 종자갱신시 '우스리스크'군에 위치한 '산학협동연구소'에서 공급됨.

- '산학협동연구소'가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종자가격을 높게 책정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종자의 조달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임.
- 종자의 퇴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성의 저하가 심화됨.

○ 농기계 및 부품의 공급은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농기계공급회사'가 담당하고 있음.
- 농장에 대한 공급은 단기 현물융자와 리-스의 형태로 이루어짐.
- 현물융자는 비료·농약의 공급절차와 같음.
- 리-스는 대개 5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5년후에는 잔존가치가 영으로 처리됨으로써 농장의 소유가 됨.
- 외국법인에 대한 리-스 실적은 없었으나, 가능성은 있음.

○ 연료 및 전기의 경우 국영기업에서 공급하며, 여타 농자재와 같이 단기 현물융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자금사정이 나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러시아산, 수입산, 한국산 농자재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음. 유불리가 명백해질 때까지 다양한 경로로 농자재 조달
- 대형 농기계를 제외하고 모든 농업기자재, 투입재는 러시아산과 국산을 병행하여 조달

○ 이앙식 재배를 위한 논, 비닐 하우스, 밭 등 한국산 농업기자재를 활용할 수 곳에서는 최대한 국산을 활용
- 국산 농업기자재의 현지 판매 기반으로 활용
- 국산 농업기자재의 현지 적응 시험 수행

5.3. 영농과 생산기반 확충

○ 생산기반 확충
- 연해주 농장의 경지, 수리시설, 창고 및 기타 시설의 상태는 50%는 대체로 양호하나 20~30% 가량은 투자를 요함(1997년 조사 결과).
- 농지 임차 형태의 단독경영이라면 생산기반에 대한 초기투자소요액이 큰 비중을 차지함.
- 합영 형태의 협력농장이 설립된다면 생산기반에 대한 초기투자 소요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임. 그러나 농업협력 기간이 장기화되면 생산

기반에 대한 투자를 점차 증가시킴.

○ 영농

- 생산기반이 갖추어진 농지에서 우선 작물을 재배하고 생산기반이 확충되는 대로 재배면적 확대
- 대부분의 면적은 벼, 콩, 휴경 등으로 러시아식 윤작 실시
- 일부 면적에서 벼 이앙재배, 담수직파재배 실시
- 일부 면적에서 채소류, 과채류 하우스재배와 노지재배 실시
- 일부면적을 시험포로 활용

5.4. 생산물의 처리 및 유통

5.4.1.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 대상 농산물

- 쌀, 콩 등 곡물류

○ 지원 방식은 정부가 최소시장접근물량(MMA물량)으로 구입, 북러간 철도를 이용하여 북한에 직송

5.4.2. 국내 수입

○ 남북한간에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여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중단될 경우 국내 수입

○ 대상 농산물

- 쌀, 콩 등 곡물류

○ 쌀은 최소시장접근물량(MMA물량) 수입, 콩은 일반 수입

- 수입대상 곡물품목의 특성을 연해주산에 맞추어 공시하는 방안

※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연해주 농장에서 생산하는 벼와 콩 품종을 특성화할 필요가 있음.

5.4.3. 임금 지불

○ 생산물의 일부를 임금노동자 혹은 도급제 노동자에게 현물로 지급

○ 대상 농산물

- 농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쌀, 콩, 채소, 과채류)

5.4.4. 현지 시장 출하

○ 대상 농산물
- 채소, 과채류

○ 채소 및 과채류를 현지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통경로를 새롭게 개척해야 함.
- 현지 농산물 유통업자와 계약재배 실시
- 현지 농산물 시장법인과 납품계약 실시

6. 6단계: 한북러 농업협력사업 확대

6.1. 연해주 농업협력사업 확대 조건

○ 수익모델의 개발
- 시범농장을 운영한 결과 향후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모델이 개발된 경우 협력사업을 확대함.

○ 남북한 농업협력 추진
- 수익성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시범농장 운영과정에서 남북한 협력이 추진되고,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된다면 연해주 농업협력을 확대할 수 있음.

○ 한국측이 연해주 농업투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러시아간에 공식적인 농업협력협약 등이 체결될 필요가 있음.

6.2. 농장경영의 확장

○ 시범농장 규모의 협력사업을 이웃 농장으로 확대하는 수준의 협력사업 확대
- 시범사업 결과 중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예상되거나, 정부의 대북식량

지원 추진정책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될 때 추진 가능함.

6.3. 항카호주변 20만 ha 개발 계획에의 참여

○ "항카호주변 20만 ha 개발계획"에 참여하는 수준의 대규모 협력사업
- 남북한간의 정치적 관계가 안정되어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 장기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 가능함.

제 5 장

협력사업 추진 단계별 문제와 대응방안

1. 준비단계의 문제

1.1. 연해주 정부와의 협의 단계

1.1.1. 연해주 정부의 의문

○ 연해주 정부의 의문제기
- 협력농장에서 북한 노동력을 고용한다면 러시아측 지역주민들의 이익은 무엇인가?

○ 한국측 대응 방안
- 북한노동력을 고용해도 러시아측 이익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북한 노동력 고용부문은 노동집약적인 채소, 과채류 생산부문과 벼 이앙식 재배 부문임. 이 면적은 20% 미만이므로 현지 노동력 고용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음.
- 시범농장이 농장(농지) 임차형태로 설립될 경우 생산기반과 농기계

등 많은 초기투자가 이루어짐. 이 경우 건설과 농기계 부문의 고용 증대 효과가 발생
- 농산물 수출 혹은 대북 지원시 수송부문에서 고용 증대 효과 발생
- 한국과 러시아간에 농업기자재 및 농업생산기술이 교류됨.

1.1.2. 연해주 정부의 대규모 투자 요청

○ 연해주 정부가 요청하는 사항
- 연해주 정부가 "항카호 주변 20만 ha 개발계획"에 한국이 협력할 것을 요청
- 이 계획 추진을 위해 "공동 작업반(working team)"을 구성하여 함께 연구할 것을 요청

○ 한국측 대응 방안
- 아직 시범농장 설립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시범농장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협력이 우선임.
- 항카호 개발 협력은 시범농장 운영 과정에서 검토함.

1.1.3. 북한 노동력 고용 관련 러시아측 역할

○ 북한 노동력 파견은 남북한 당국자간에 공식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따라서 현 상황에서 러시아측의 역할은 사실상 없음.

○ 단지 북한 노동력 고용 과정에서 법률위반, 이탈 등의 문제 발생시 가급적 한북러간 농업협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양해가 필요함.

○ 러시아 이민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1.2. 임대차 계약의 경우

1.2.1. 농지 임차료 협상

○ 임대차 형태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러시아측이 토지 임대료를 고율로 요구할 수도 있음.
- 러시아측 토지소유권자(연방정부, 지방정부 또는 농장)가 임대료 이외

의 이익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높은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한국측의 대응 방안

- 임대료 이외에 러시아측 계약자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익을 제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농지의 물리적인 조건, 생산기반의 상태 등에 따른 예상 토지생산성에 근거하여 임차료를 책정하고 협상함.
- 다른 계약 조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함.

1.2.2. 임차 기간

○ 임대차 형태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임대차 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님.
- 다른 계약 조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함.

○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길게 책정해야 할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 임대차료가 저렴할 경우
- 농지기반정비에 대한 초기투자액이 클 경우
- 타당성 조사결과 시범농장 경영환경이 유리하게 분석된 경우 등

○ 임대차 계약 기간을 짧게 책정해야 할 경우

- 앞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

1.3. 합작 계약의 경우

1.3.1. 농지와 시설에 대한 재산권 문제

○ 농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소유로 되어 있음. 그러나 농지의 사용권은 농장 또는 개인에게 있으며, 농장의 사용권에 대한 지분은 개인에게 있음.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분권 행사는 농장측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고(농장 정관), 이 위임된 권리를 바탕으로 농장은 합영농장에 토지를 출자하게 되는 것임.

○ 합작투자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과 농장의 관계임.

- 각 농민이 농장에 위임한 재산권인 지분을 되찾으려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한국측 대응 방안

- 농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경우 합작기업 설립을 위한 계약시 현지 농장측의 토지출자에 대한 별도의 강력한 대응조항을 만들어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해야 함.
- 연해주 정부, 군청, 농장대표자, 현지법률가 입회하에 계약해야 함.

1.3.2. 합작시 농장자산의 평가

○ 한 농장의 미곡 생산비 산정자료를[3] 분석한 결과 감가상각비가 전체 생산비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사실은, 모든 생산시설과 농기계 등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임.
- 실제로는 농장의 시설과 농기계 상태는 매우 불량함. 따라서 감가상각비 항목은 단지 유령항목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합작계약시 현지농장의 현물투자 평가액을 과장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한국측 대응 방안

- 러시아 현지 농장측 자산의 평가는 회계장부가치에 근거하기보다는 협상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합농장의 경우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여 러시아측 현물출자액을 현실화 할 수 있었음.

1.3.3. 합작시 농장부채 처리 문제

○ 러시아의 농장은 국가, 주정부 또는 식량공사 등에 대해 많은 채무를 지고 있음.

- 현지 농장의 부채가 합영농장에 승계되는 경우를 경계해야 함.

○ 한국측 대응 방안

- 러시아 농장의 부채 문제는 새로운 합영기업을 만들 때 한국기업과

---

3) 페트로비찬스키 농장의 미곡 생산비 산정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임(1997년 조사).

농장이 출자하는 형식으로 해소할 수 있음.
- 합영 계약시 관련 사항에 대한 문구를 삽입

2. 시범농장 건설 및 운영단계의 문제점

2.1.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초기투자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함.
- 1990년대초 이래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시용하지 않아 지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임. 지력회복에 상당한 노력이 요망됨.
- 영농의 효율화를 위해 필지당 농지의 규모를 재조정하는 등 경지정리가 필요함.
- 농장의 수리시설은 건설연도(내구연한)와 보존상태가 크게 다른 상태이며, 개보수 없이는 미곡생산이 불가능한 농지의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창고 등 농업시설과 농기계가 낡아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임.

○ 한국측 대응 방안
- 당장의 농업생산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부터 개보수하고, 이윤 발생과 상호 신뢰 구축에 따라 점차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2.2. 농업기반공사와 극동수리기획의 경합

○ 시범농장의 농업생산기반을 개보수할 때 설계 분야에서 농업기반공사와 극동수리기획이 경합관계가 될 수도 있음.
- 극동수리기획은 자신들이 설계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있음.

○ 한국측 대응 방안
- 시범농장 내의 생산기반 개보수 설계와 시공에 있어 농업기반공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되 극동수리기획(건설)을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3. 노동 관련 문제

○ 현지농장의 노임지급은 원칙적으로 월급이지만 현금의 부족으로 인해 작업도급제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음.

○ 노동조합 관련 법률은 사회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사용자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은 실정임.

- 농장의 어려운 경영 사정으로 인해 현재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는 없는 현실이지만, 경영이 안정되어 장기적으로 이윤이 발생하게 되면 노동자의 요구가 현실화 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측 대응 방안

- 러시아 국내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따를 수밖에 없음.
- 시범농장의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도급제 고용을 유지함.

2.4. 농산물 수출 및 대북 지원 문제

○ 농산물 수출과 대외 원조에 제약에 대한 검토

- 외국으로부터 곡물원조에 따른 해당 농산물의 수출이 금지된 바 있음.
- 일부 농산물에 한해 연해주 정부로부터 수출쿼터를 획득해야 하는 품목이 있음.

○ 우리측 대응 방안

- 향후 러시아가 원조를 받게 된다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사전에 러시아측의 규제로 수출이나 대외원조가 불가능할 경우 생산비 가격으로 연해주 정부가 수매할 것을 요구

2.5. 시범농장 운영 민간이양 문제

○ 중장기적으로 시범농장 경영을 민간에 이양

- 참여 노동자에게 도급제 시행 → 분양

- 기업에게 경영 위탁 → 양도

○ 기업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방안

- 민간기업의 선정은 일정 운영조건 하에서 입찰 형식으로 선정
- 조건은 북한 노동자 고용, 경영비 투자 지속, 연해주정부 및 합영상대농장과의 우호협력 지속 등

제 6 장

요 약

1.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의 의의와 목적

□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의 의의

○ 연해주는 남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 러시아가 남북한 협력에 지렛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해주 3국 농업협력사업의 의의가 있음.

- 북한 관련 변수가 중시되므로 공익적 경제협력사업으로서 의의가 있음. 따라서 수익성 확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

□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의 추진 목적

○ 단기적으로 북한에 식량지원을 통해 남북한 관계 개선

-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고, 북한 노동력을 참여시켜 새로운 남북한 협력 모델 개발

○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 해외식량생산기지 확보

- 통일 후 크게 증가할 식량수요에 대비하여 해외식량생산기지 확보

○ 연해주 현지 한국 민간기업과 단체를 간접적으로 지원

- 정보 및 노하우를 제공하고, 농자재 조달 및 농산물 유통에서 협력하여 규모의 경제 달성

○ 남북한 화해협력에 러시아의 역할을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생산기술 교류를 통해 러시아 역할 유도

○ 이밖에 국산 농업기자재의 러시아 시장 개척 기지로 활용, 연해주를 대상으로 한 종자 개발 및 수출 기반으로 활용, 이주 고려인의 연해주 정착 지원 등의 부수적 목적이 있음.

2. 연해주 농업협력사업 기본구상

□ 협력사업 주체와 협력 대상

○ 협력사업의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

- 지원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정책목표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

○ 추진 단계별로 대행주체(agent)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타당성조사, 시범농장 설계, 시범농장 건설은 농업기반공사가 담당
- 시범농장 운영은 공익적 기능이 강한 공기업이 담당
- 본 사업 단계의 운영은, 시범사업 대행 공기업 평가결과와 본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다시 선택

○ 농업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호 협력해야 할 주체

- 한국측: 농림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진출업체 및 단체
- 북한측: 북한정부
- 러시아: 러시아 정부, 연해주 정부, 군청, 농장, 고려인단체

□ 농업협력사업 규모

○ 규모 설정을 위한 고려사항

① 러시아측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연해주 정부의 관심 분야를 고려해야 함.

② 북한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③ 투자자금의 조달능력, 대행주체의 경영능력, 생산물의 처리 능력을 고려해야 함.

○ 북한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면 농업협력사업 규모가 클수록 목적 달성에 유리함. 그러나 먼저

소규모의 시범농장을 운영하여 향후 농업개발협력의 규모와 방안을 타진하는 방식이 적절함.

○ 즉,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은 이원적으로 접근함.

① 시범농장 운영

② 항카호 주변 20만ha 개발에 대한 협력 가능성 모색

□ 시범농장 개발 및 운영

○ 시범농장을 운영하는 목적

- 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범재배방식 수행
- 러시아 국내시장 및 수출시장을 조사하여 판로 확보
- 농산물 가공, 농기계 이용조직 등 수익모델 창출
- 농장 운영 과정에서 한국측에 유리한 제도적 관행을 정착
- 연해주 농업협력사업에 북한의 참여 유도

○ 시범농장의 규모 결정을 위한 고려 사항

- 벼농사 부문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생산 및 유통 단위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
- 인근 농장에서 생산된 물량과 함께 소규모 RPC 1기를 경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규모

○ 시범농장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작목과 경지를 배분

- 러시아 연해주 방식의 벼, 콩, 휴경의 윤작 지구
- 벼 이앙재배, 담수직파재배 실시 지구
- 채소류, 과채류 노지재배 및 하우스 지구
- 품종 및 재배방식 비교 시험포

○ 북한과의 협력 문제는 북한당국과 공식적으로 협의하며, 북한 노동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3국간에 사전에 검토하여 해결 방안 마련

○ 시범농장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처리

- 곡물은 생산비를 고려한 가격으로 정부가 매입하여 북한에 지원
- 대북 지원이 여의치 않을 때 MMA 물량으로 국내 도입
- 일부 곡물은 도급제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지급
- 채소류와 과채류는 러시아 국내시장 판매

□ "항카호 20만ha 개발계획(2002～2010)" 협력에 대한 검토

○ 항카호 20만ha 개발계획에 협력하기 위한 조건

① 시범농장 운영과정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②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협력모델이 개발됨.

③ 대북한 식량지원이 정례화됨.

④ 수익성이 부분적으로 확보됨.

○ 항카호 20만ha 개발계획에 대한 협력 방식

- 직접적인 참여 혹은 공동투자사업은 위험성이 큼.
-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발협력차관의 형태로 참여를 고려함.
- 연해주정부가 추산한 사업비는 2010년까지 9년간 총 100억 루블이며, 이중 해외투자유치 희망액이 87억 루블임.

3. 연해주 농업협력사업 단계별 추진전략

3.1. 1단계: 연해주 정부 접촉과 조사대상 농장 선정

○ 연해주 당국자와 연해주 농업환경, 한북러 농업협력사업 추진의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

- 한국측이 연해주 농업에 투자함으로써 한·북·러 3국간의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3국간의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는 내용을 연해주 정부 당국자에게 설명
- 연해주 정부로부터 연해주의 농업정책, 향후 농업개발계획, 재원조달 방안 및 외자유치 계획 등 한국측이 참고할만한 정책, 계획 등을 설명받고 관련 자료를 수집
- 타당성 조사 및 시범농장 설립과 운영과정에서의 협조 다짐.

○ 시범농장 후보지에 대한 의견 교환과 추천

- 한국측 관심 농장에 대한 러시아측의 의견과 추천을 받고 각 농장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

- 한국측 관심농장: 아방가르드농장 등 철도 통과 농장 4개소, 페트로비찬스크 농장 등 1997년 조사농장 3개소
- 러시아측 추천 농장 2~3개소

○ 예비 타당성 조사 농장 선정과 협조
- 우리측 관심 농장과 러시아측 추천 농장에 대한 ① 도면상 검토, ② 진출업체 관계자의 조언, ③ 해당 농장의 의향 등을 토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농장을 2~3개소로 선정
- 예비 타당성 조사 농장 선정 사실을 연해주 정부, 군청, 해당 농장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함.

3.2. 2단계: 후보농장 선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

○ 연해주 농업투자환경 및 타당성 조사 대상 농장에 대한 사전 정보의 입수와 활용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농장이 1997년 조사 농장 혹은 한국업체 및 단체가 진출해 있는 농장과 중복될 경우, 타당성 조사 이전에 가용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

○ 유능한 통역요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확보 가능성 타진
- 유능한 통역요원을 확보하여 자료 입수시 즉시 번역하여 활용
- 유능한 현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물색함.

○ 후보농장 선정
- 투자대상 농장들의 투자 환경을 비교 분석하여 후보농장을 선정

3.3. 3단계: 시범농장 후보지 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및 현지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임시사무소 개설
- 보완조사, 정부간 협의, 연락 업무, 현지법인 설립 준비작업 수행
- 시범농장 설립시까지 유지

○ 토지개발 분야 중점 조사 내용
- 측량, 설계비 및 공사비 산정

- 수리시설 개보수비 및 농지개선 공사비 산정
- 부대시설 개보수비 산정
- 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기반시설 파악과 이용조건 조사

○ 농업분야 중점 조사 내용
- 시범농장 세부 영농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 연해주 농업관련 기상자료 정밀 검토
- 시범농장에 적합한 시설형태와 소요자재 검토
- 토지 이용면적별 농기계 투입계획 작성

○ 유통분야 중점 조사 내용
- 시범농장 생산물의 연해주 유통 절차 및 비용 추정
- 시범농장 생산물의 대북 수송 절차 및 비용 추정
- 연해주의 농산물 수출입관련 제도 및 관세체계 보완조사
- 연해주의 농업기자재 유통체계 보완조사

○ 제도분야 중점 조사 내용
- 농업개발투자 관련법 및 제도 보완조사
- 시범농장 설립 절차 조사
- 자문변호사 및 자문공인회계사 선임

○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 장단기 경제성을 분석
- 시범농장 개발계획을 작성

3.4. 4단계: 시범농장 설립

□ 현지법인 설립과 준비

○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주체를 선정함.
-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자는 시범농장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기관(공기업)이며, 현지법인 대표자는 그 기관에서 임명한 자로 함.

○ 현지법인 설립을 전후하여 연해주 현지의 법률적 사항에 대해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함.
- 진출업체, 연해주 정부, 군청의 전문가로 비공식 자문 그룹을 구성

하여 수시로 자문을 구함.

- 현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와 계약하여 공식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음.
- 자문단 및 변호사의 자문 하에 현지법인 설립(정관 작성과 등록)

□ 시범농장 설립을 위한 농지확보계약

○ 대안 1 : 현지법인이 농지 및 부속시설을 임차하여 농장 설립

- 연해주에서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체는 주정부, 군청, 농장 등임. 농지 소유주체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달라짐.
- 주정부, 군청, 군부 등 국가기관 보유농지를 임차하는 경우, 토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임차료가 매우 저렴할 것으로 기대됨.
- 현지농장의 농지를 임차하려 할 경우 농지 및 부속시설 임차료가 정부기관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음.
-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① 한국측이 느끼는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의 정도, ② 해당 농지 및 부속시설의 상태와 가치 등 자산평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다면 임차료가 비싸더라도 상태가 좋은 농지를 선택하여 초기투자비를 감소시키고, 위험과 불확실성이 낮다면 초기투자 소요규모가 크지만 임차료가 저렴한 농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 대안 2 : 한국측 단체로부터 재임차하여 농장 설립

- ① 대규모 농지를 이미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한국측 단체가 재임대 의사가 있고, ② 러시아 국내법으로 문제가 없으며, ③ 러시아측 토지 임대자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임.
- 러시아측과 한국단체간의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면 추진 불가능

○ 대안 3 : 합영농장 설립

- 한국측 현지법인과 현지농장이 공동으로 새로운 농장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임.
- 한국측이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계약해야 함. 이를 위해 협상을 통해 현지농장의 출자지분율을 최대한 낮추고, 한국측의 투자규모는

늘려야 함.

- 영농초기의 경영비와 함께 농기계구입 및 생산기반 확충 등에 대한 투자도 명시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토록 노력

□ 시범농장 설계 및 운영 준비

○ 대표, 부사장, 상주직원 등 핵심요원 임명 및 고용

○ 시범농장 종합 실행계획 수립

- 연차별 시범농장의 농업생산기반 확충 실행계획을 수립
- 연차별 작목 및 경지 배분 실행계획을 수립
- 연차별 농기계 도입 실행계획을 수립

○ 시범농장 설계

- 시범농장의 규모, 경지 배분 실행계획, 농업생산기반 확충 실행계획 등에 맞추어 시범농장 설계
- 의견 수렴을 거쳐 설계안 확정

○ 시범농장 법인 설립(정관 작성과 등록)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신청 및 등록

3.5. 5단계: 시범농장 운영

□ 노동자 고용

○ 상시 노동을 위한 현지인 고용의 경우 도급제 고용방식을 활용하고, 농작업이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데 따른 일시 고용 노동자는 임금제로 고용

- 임금과 도급제를 통한 수입이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조정
- 전문 분야별 임금 및 도급급여 수준은 ①러시아 농장의 사례 ②농업기반, 농기계, 농자재 여건 ③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북한과의 협력 및 노동자 고용

- 북한 당국의 노동자 파견 의사에 따라 고용이 가능함. 따라서 시범농장 운영 초기에는 북한 노동자의 고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 당국과 협의시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 북한이 시범농장 내에서 반독립적인 형태로 농업경영에 임하는

협력사업 형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의사 타진과 접촉은 다양하게 유지
  ① 남북한 당국자 회담을 통해 의사 타진
  ② 북한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민간단체, 재미동포 등을 통해 의사 타진
  ③ 러시아 당국을 통해 의사 타진
- 러시아 연방정부 이민국의 제3국(북한)노동력 도입에 관한 사전 승인 필요

□ 농업기자재 조달

○ 자금사정이 나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러시아산, 수입산, 한국산 농자재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유불리가 명백해질 때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농자재를 조달

- 대형 농기계를 제외하고 모든 농업기자재, 투입재는 러시아산과 국산을 병행하여 조달

○ 이앙식 재배를 위한 논, 비닐 하우스, 밭 등 한국산 농업기자재를 활용할 수 곳에서는 최대한 국산을 활용

- 국산 농업기자재의 현지 판매 기반으로 활용
- 국산 농업기자재의 현지 적응 시험 수행

□ 영농과 생산기반 확충

○ 생산기반 확충

- 연해주 농장의 경지, 수리시설, 창고 및 기타 시설의 상태는 50%는 대체로 양호하나 20~30% 가량은 투자를 요함(1997년 조사 결과).
- 농지 임차 형태의 단독경영이라면 생산기반에 대한 초기투자소요액이 큰 비중을 차지함.
- 합작 형태의 협력농장이 설립된다면 생산기반에 대한 초기투자 소요액은 임차 형태의 단독경영에 비해 작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농업협력 기간이 장기화되면 생산기반 투자를 점차 증가시킴.

○ 영농

- 생산기반이 갖추어진 농지에서 우선 작물을 재배하고 생산기반이 확충되는 대로 재배면적 확대

- 대부분의 면적은 벼, 콩, 휴경 등으로 러시아식 윤작 실시
- 일부 면적에서 벼 이앙재배, 담수직파재배 실시
- 일부 면적에서 채소류, 과채류 하우스재배와 노지재배 실시
- 일부면적을 시험포로 활용

□ 생산물의 처리와 유통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 대상 농산물은 쌀, 콩 등 곡물류
- 지원 방식은 정부가 최소시장접근물량(MMA물량)으로 구입, 북러간 철도를 이용하여 북한으로 직송

○ 국내 수입

- 대상 농산물은 쌀, 콩 등 곡물류
- 남북한간에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여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중단될 경우 국내 수입
- 쌀은 최소시장접근물량(MMA물량)으로 수입, 콩은 일반 수입

○ 임금 지불

- 대상 농산물은 농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쌀, 콩, 채소, 과채류)
- 생산물의 일부를 임금노동자 혹은 도급제 노동자에게 현물로 지급

○ 현지시장 출하

- 대상 농산물은 채소, 과채류
- 현지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지 농산물 유통업자와 계약을 하는 등 유통경로를 새롭게 개척해야 함.

3.6. 6단계: 한북러 농업협력사업 확대

□ 연해주 농업협력사업 확대 조건

○ 수익모델의 개발

- 시범농장을 운영한 결과 향후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모델이 개발된 경우 협력사업을 확대함.

○ 남북한 농업협력 추진

- 수익성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시범농장 운영과정에서 남북한 협력이

추진되고,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된다면 연해주 농업협력을 확대할 수 있음.

○ 한국측이 연해주 농업투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러시아간에 공식적인 농업협력협정 등이 체결될 필요가 있음.

- 한러간 농림수산업 협력을 위한 협정(가칭)

□ 농장경영의 확장

○ 시범농장 규모의 협력사업을 이웃 농장으로 확대하는 수준의 협력사업 확대

- 시범사업 결과 중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예상되거나,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추진정책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될 때 추진 가능함.

□ 항카호 주변 20만 ha 개발 계획에의 참여

○ "항카호 주변 20만 ha 개발계획"에 참여하는 대규모 협력사업

- 남북한간의 정치적 관계가 안정되어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 장기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 가능함.

참 고 문 헌

고재모, 이두순, 최윤국, 1996.12, 『주요 농산물의 해외개발수입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상청, 1995. 『북한기상 20년보(1973～1994)』.

김덕주, 1999.5, 『최근 한러관계의 현황과 전망: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연구원(인터넷 게시 자료).

김정부, 1997.12,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농업투자 관련 법령과 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진흥공사, 1997.4, 『러시아 극동지역 농업투자환경 사전조사 보고서』.

_____, 1997.9, 『러시아 연해주 농업투자환경 조사보고서』.

_____, 1997.12, 『97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사업 연말평가 및 토론회 결과 보고서』.

농업기반공사, 2001.5, 『러시아 연해주 농업진출 한국기업 및 단체의 경영실태 조사보고서(중간보고)』.

_____, 2001.4, 『러시아 연해주 농업진출업체 경영실태조사단 현지 수집자료 모음(2001.4.17～4.28)』.

_____, 2001.5, 『러시아 연해주 주정부의 항카호 주변 20만 ha 농업개발계획』.

농촌진흥청, 2001.3, 『북방국가에 대한 해외농업 진출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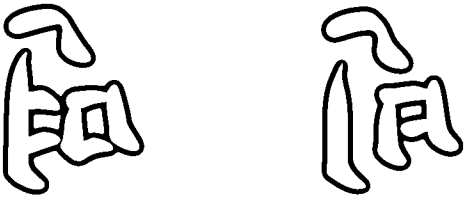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8, 『북러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와 시사점』, KIEP동향분석속보 제01-28호.

박진환, 2001.6, "한국 민간자본의 극동러시아 농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관하여", 『북방농업연구』, 제11권, 북방농업연구소.

외교통상부, 2001, 한러간 현안(인터넷 게시 자료).

Tour, A. S., A. S. Korlrekov, V. S. Nodovski, 1997. 11, "극동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벼농사를 위한 토지개발", 남정욱 역, 『북방농업연구』, 제4권, 북방농업연구소.

부 록



<부록 1> 시범농장의 법적 형태 검토

○ 시범농장의 검토대상 법적 형태
- 폐쇄형 주식회사(ZAO)
- 유한책임회사(OOO)
- 농업생산조합(СХПК(에스케벡카) : Agricultural Manufacturing Cooperatives) 현실적으로 법적인 실효성이 없음.

○ 시범농장을 한국의 단독기업으로 할 경우
- 유한책임회사(OOO) : 모든 절차가 간편함.

○ 시범농장을 3개국 합작기업으로 할 경우
- 유한책임회사(OOO)와 폐쇄형 주식회사(ZAO) 가운데서 장단점을 검토 후 결정

○ 시범농장으로 설립시 핵심사항
- 농장의 경영권 장악과 효율적인 정관 작성임.
-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형태를 택하여야 함.

○ 시범농장의 경영권 확보방법
-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할 때 필요한 정족수인 총지분이나 총주식의 70%이상 차지하여야 함. 가장 안전한 한 수준은 총지분이나 총주식의 76%를 차지하는 것임.
- 이렇게 하기 위해 정관자본금을 초기에 많이 납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시범농장 이해관계자가 희망하는 형태
- 한국 : 최선 단독기업, 차선 합작기업
- 러시아 하롤군 : 합작법인
- 씨바콥스키농장 : 합작법인
- 뻬뜨로비찬스코예농장 : 법인화 하지 않는 합작경영

○ 합작시 토지이용 등 계약당사자
- 당사자 : 한국 대표, 하롤군 대표, 농장 대표
- 입회자 : 연해주정부 대표

<부록 2> 회사설립 절차와 등록 방법(주식회사)

○ 주식회사 형태 결정
- 폐쇄형주식회사(ZAO)
- 개방형주식회사(OAO)

○ 정관 작성과 정부기관 등록
- 정부기관 등록은 세무신고의 의무도 있음.
- Social Fund : 4가지(연금기금, 사회보장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 등록과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방법
  ① 회사설립계약서
  ② 정관
  ③ 설립 및 등록신청서
  ④ 설립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
    ▪ 개인 : 여권 사본
    ▪ 법인 : 정관 또는 법인의 위임받은 개인
  ⑤ 설립자본금의 50%를 등록시기에 납입하고, 나머지 50%는 1년이내에 납입하여야 함.
  ⑥ 설립자본금의 규제
    ▪ 공개형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러시아 최저임금의 1,000배 이상이 되어야 함(최저자본금 = 1,000×러시아최저임금(100루블))
    ▪ 폐쇄형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러시아 최저임금의 100배 이상이 되어야 함(최저자본금 = 100×러시아최저임금(100루블))
    ▫ 등록비
      ◦ 법인 : 6 × 러시아최저임금(100루블)
      ◦ 개인 : 2 × 러시아최저임금(100루블)
  ⑦ 외국자본 도입을 확인하는 증명
    ▫ 외국 파트너의 신분 확인
      ◦ 주러시아 한국총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

- 지불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은행 또는 금융기관이나 신용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⑧ 외국합작기업의 등록처

- 연방정부 법무부에 등록

○ 등록처 및 방법

① 법인설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 군수가 설립허가서 발급 → 군청에 등록 → 등록증 발급

② 외국인법인체의 등록

- 연해주의 등록처 : 연해주 등록센터(블라디보스톡 소재)
- 정관자본금(УК, Charter Capital)의 규모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체의 등록처가 다름.
- 100,000루블(3,200US$)이하 법인
  - 연해주내에서 설립된 법인은 브라디보스톡에서 임시 등록후 모스크바 법무부 산하의 국가등록사무소(State Registration Chamber)에 등록함. 이 경우 모스크바로 가서 등록하는 것보다 연해주에 있는 법률회사를 통해 등록수속을 할 경우 약 350US$의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음. 모스크바를 왕복하는 것보다 유리함.
- 100,000루블(3,200US$)이상 법인
  - 이 경우의 등록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스크바 연방정부 법무부 산하의 국가등록사무소에 직접 등록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함.

③ 주식의 발행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하면, 등록증을 발급해 줌.

④ 투자규모의 차이에 따른 구비서류의 차이는 없음.

○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참고사항(농업법인도 포함)

- 정관자본금의 충당을 위해 도입하는 기계, 장비는 설립등록후 1년이내에는 무관세임.
- 현재 일반적인 기계, 장비 등의 관세율은 20%임.
-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정관자본금의 50%는 설립등록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50%는 1년이내에 납입하는 것으로 정관에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기계, 장비 등 도입이 많을 경우 정관자본금의 규모

를 크게 하여야 1년이내의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정관자본금이 100,000US$ 이상일 경우는 설립 및 등록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모스크바에서 하는 것이 비용, 시간 등의 측면에서 유리함.

■ 설립 법인의 정관 작성

○ 법인의 정관에는 시범농장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표시하여야 함.

- 시범농장의 사업은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 대외경제활동(수출입 업무), 기자재 공급업무 등을 표시하여야 함.
- 판매는 자가생산 농산물에 자연생산물(잣, 버섯, 고사리, 약초 등), 그리고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표시함.

○ 시범농장의 운영을 위하여 '제3국인 노동력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 법인의 정관에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활동이 예상되는 사항까지 감안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음.

<부록 3> 북한 노동력 고용 문제

1. 외국노동력 도입과 관련된 러시아 제도

○ 외국인을 고용할 때 고용하여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군을 통하여 신청하며, 이는 연방정부 이민국의 허락을 받아야 함.

○ 호롤군의 외국인 고용

- 1997년 이전부터 주로 중국인을 매년 약 50명 정도 고용하여 왔음.
- 농장에서 매년 100여명 정도 외국인의 고용을 신청하지만 연방정부 이민국에서 50명 정도만 허가하고 있음.

○ 외국인고용세

-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고용세를 러시아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 외국인고용세의 부담주체는 러시아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법인임.
- 외국인고용세 부과방법은 외국인을 고용한 러시아내의 법인이 외국인 노동력 공급단체와 계약한 인건비 계약금액의 35%를 외국인고용세로 부과함.
- 현재 외국인고용세의 세율을 35%에서 24%로 인하하는 법안을 국가하원에 상정하여 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행지시가 없어 시행하지 않고 있음.

2. 북한 노동력 고용과 관련된 문제

○ 최덕근 영사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농업 노동력이 러시아에서 노동하는 것이 단절되었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르쫌에 있던 북한 농업대표부도 모두 철수하였음.

○ 인건비 수준 비교

- 북한인 : 200-400US $/월(요구액)
- 러시아인 : 100US $/월(초과근무수당 등 포함)
- 중국인 : 400US $/월(초과근무수당 등 포함)

○ 북한 노동력의 연해주 진출 실태

- 건설대표부 : 9개소
- 북한 노동력은 팀단위로 운영되고 있음.
  ▫ 팀 : 반장 1명, 부반장 1명, 필요한 수의 반원으로 구성
- 북한의 해외 송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인건비를 납부하고 남은 수입은 개인이 가질 수 있음.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하여 일과 후에도 일을 찾아 가정집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
- 북한은 현재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는 취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시범농장에서 북한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도입되어야 함.

○ 북한 노동력의 활용을 위한 핵심과제
- 북한의 협력의지
- 러시아연방정부 이민국의 허가
- 북한 노동력의 고용 조건

<부록 4> 예산 및 기금으로 편입되는 세금 및 부과금

1. 각종 기금

○ 연금 기금, 의료보험 기금, 사회보험 기금, 고용 기금

2. 소득세

○ 러시아 연방에 상주하는(거주권을 지닌) 외국인의 소득은 러시아인의 경우와 같음.

○ 러시아 연방에 상주하지 않는(거주권이 없는) 자는 소득 원천이 러시아일 경우에만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됨.

3. 부가가치세

○ 자체 생산물 및 제품의 판매액에서

- 공업제품의 경우: 판매고의 20%(1997년 현재)
- 몇몇 식량 상품의 경우 : 판매고의 10%(1997년 현재)
  (10%의 비율이 부과되는 상품의 목록은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해서 규정)

4. 이윤세

○ 농산물 판매액이 70% 이상인 농기업은 면제(1997년 현재)

5. 도로 기금

○ 차도 이용세

- 기업 장부상 차량이 있는 경우, 운송수단 보유자들에게는 각각의 운송수단 종류의 마력에 따라 비율이 결정됨.

6. 지방세 : 하롤군 참조

<부록 5> 러시아 농업지역의 주요 조세-하롤군 사례-

1. 토지세

○ 세율
- 경작지 : 14루블 08코페이크/ha
- 초 지 : 4루블 69코페이크/ha
- 목장지 : 2루블 82코페이크/ha
- 대 지 : 720루블/ha

○ 부과 및 납부방법 : 연간 1회 부과

2. 판매세

○ 세율 : 5%

○ 부과 대상
- 농산물을 판매할 때 대금 결재를 현금으로 한 경우 부과
- 대금 결재를 은행구좌를 통하여 결재할 경우는 부과하지 않음.

○ 납부방법
- 농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면 농장에서 구매자에게 5%의 판매세를 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함.
- 농장에서 매월 납부하며, 전월에 거래된 판매세는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함.

3. 개인소득세

○ 세율 : 13%

○ 개인소득세의 귀속
- 연방정부 : 40.6%
- 지방정부(군) : 59.4%

○ 부과 대상 : 개인소득

○ 납부방법 : 매월 납부함.

4. 환경오염세

○ 세율 : 0.003%
○ 부과 대상 : 일정기간에 사용이 예상되는 연료량
○ 부과방법
- 환경오염세 = 총연료사용예상액 × 0.003%
- 총연료사용예상액 = 총연료사용예상량 × 연료단가
○ 환경오염세의 귀속
- 연방정부 : 46%
- 지방정부(군) : 54%
○ 납부방법 : 농장에서 매분기별로 납부

5. 경찰유지세

○ 세율 : 1%
○ 부과 대상
- 농장의 총임금지급액
- 총임금지급액 = 직원수 × 임금
○ 납부방법 : 농장에서 매분기별로 납부

6. 부가가치세

○ 세율
- 농업관련 업체 : 10%
- 비농업관련 업체 : 20%
○ 부과 대상 : 생산액
○ 부과방법
- 부가가치세 = 농장의 생산액 × 10%
○ 납부방법 : 농장에서 매월 납부

7. 법인세

○ 세율 : 35%
- 현행 법인세율 35%를 24%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음.

○ 부과 대상

- 현재 농업법인에게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음

○ 납부방법 : 농장에서 매월 납부

<부록 6> 나호트카자유경제구역에서의 한러공업단지 설립을 위한 협정 주요내용(농촌진흥청, 2001)

1. 러시아 연해주 나호뜨까 자유경제지역내에 49년간 토지를 임차한다.
2. 공단의 전체면적은 330ha(100만평)로 하고 공단의 경계는 협정 부속도면에 표시한다.
3. 제1단계의 개발기간은 협정효력 발생일로부터 6년간으로 한다.
4. 제1단계 개발면적은 6만평 (20ha)으로 한다.
5. 제2단계는 1단계 완료 후 5년 이내 나머지 부분을 건설한다.
6. 공단지역을 자유관세지역으로 지정한다.
7. 토지 임대차계약은 기본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체결한다.
8. 양국 동수의 대표자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단운영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
9. 공단부지 임차기간(49년)은 종료 후 계속적으로 5년간 자동 연장한다.
10. 한국의 토지공사는 공단내부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나호트카 자유경제지역행정위는 외부기반시설 건설을 담당한다(농촌진흥청, pp184-185).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주요 내용

1. 이윤세는 첫 이윤 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며,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부가가치세는 첫 이윤 신고일까지 50% 감면한다.
2. 관세는 공단지역 재투자금액과 기업설비 재투자금액에 대한 과세대상 이윤을 공제하고 부과한다.
3. 입주기업이 수출상품 제조를 위해 러시아 시장으로부터 원부자재 구입 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전액 환급한다.
4. 지방세는 아직 구체적인 우대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연방 및 주공화국 우대조건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록 7> 러시아에서의 곡물 처리 문제

1. 러시아 국내제도의 문제

○ 러시아 국내제도
- 외국인투자보호법
- 한국과 러시아 정부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 협약
- 곡물법

○ 미국의 곡물원조와 러시아의 곡물수출 금지
- 1998. 11월 미국과 러시아간에 "식량원조협정" 합의
  - 원조품목 : 소맥(150만톤), 식육, 가금, 대두, 분유 등 310만톤
  - 원조조건 : 러시아는 5가지 원조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며, 매 6개월마다 이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함.
  - 원조결과 : 러시아는 1999년 1월부터 소맥과 대두의 수출을 금지함. 이에 따라 1999년 러시아의 소맥 수출은 급격히 감소
- 2000. 2월 미국과 러시아간에 "새로운 식량원조협정" 합의
  - 원조품목 : 소맥(30만톤), 가공식품(20만톤), 곡물 종자(2만톤) 등 52만톤. 러시아의 500만톤 요청에 미국의 재정사정으로 축소됨.
  - 원조조건 : 러시아는 2000년 중에 소맥, 밀가루, 옥수수 종자, 야채의 수출을 금지함.

○ 현재 쌀의 수출이나 대외원조는 문제가 없음.

2. 국제무역 질서의 문제

○ WTO 규정상의 문제
- 수출입을 통한 무역은 문제가 없음.
- 단지, 원조는 Food Aid Convention에 의하여 처리함.
  Food Aid Convention은 FAO의 "국제원조에 관한 규정(Agreement on Foreign Food Aid)"으로, 인도적 원조는 찬성하지만, 원조를 빙자한 상업적 이용의 목적은 금지하고 있음.

- 원조가 국제무역질서를 왜곡시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음. 국제적인 분위기는 기아해방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원조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음.

○ International Rice Agreement가 문제이나, 한국과 러시아는 협약국이 아니므로 구속받는 것은 아님.

- 국제 미곡 생산국가의 모임에서 만든 협약임.
- 이 협약은 쌀 생산 국가들이 국제간의 미곡 무역과 관련하여 자국이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쌀의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임.
- 주요 국가 :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등 쌀 수출국

빈 면

C2001－17

연해주 한·북·러 농업협력사업 추진 기본전략 연구

찍은날 2001년 8월 일　　펴낸날 2001년 8월 일
발행인 강 정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02-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